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본 교재를 필히 숙독 후에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1. 평가결과 확인

- 금년 상호협력평가 결과(안)는 6월 중순경 건설업체 신고안내시스템 (<http://siljuk.cak.or.kr>) 내 상호협력평가 ‘평가결과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평가 결과 및 내역에 대한 문의는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협회 담당자 문의처(02-3485-824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공문 및 사실확인서류를 협회(본회 상호협력평가팀)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6월 중순경 SMS 및 ‘건설업체 신고안내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는 이의사항 접수가 절대 불가합니다.

3. 기 타

- SMS를 통한 안내는 신청서상에 기재된 각 업체별 담당자 연락처로 통보되니, 담당자 부재 또는 퇴직 등으로 연락처 변경 필요시 즉시 연락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누락 또는 미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평가 주요 변경사항

1. 하도급 기성실적 확인 자료 국세청 연계 (p.18)

-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 하도급 낙찰률 평가 신설 (p.35)

- 하도급 낙찰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평가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3. 협력업자 재무지원 인정기준 강화 (p.46)

- 협력업자 재무지원으로 인정되는 전자하도급계약 인지세액 부담 비율 기준이 종전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4. 신인도 감점 범위반행위 추가 (p.67)

- 부당내부거래, 부실시공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5. 사망사고 현장 평가 신설 (p.71)

-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6.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가점) 인정기준 강화(p.74)

- 임금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해 실적이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7. 협력업자 안전지원 평가(가점) 신설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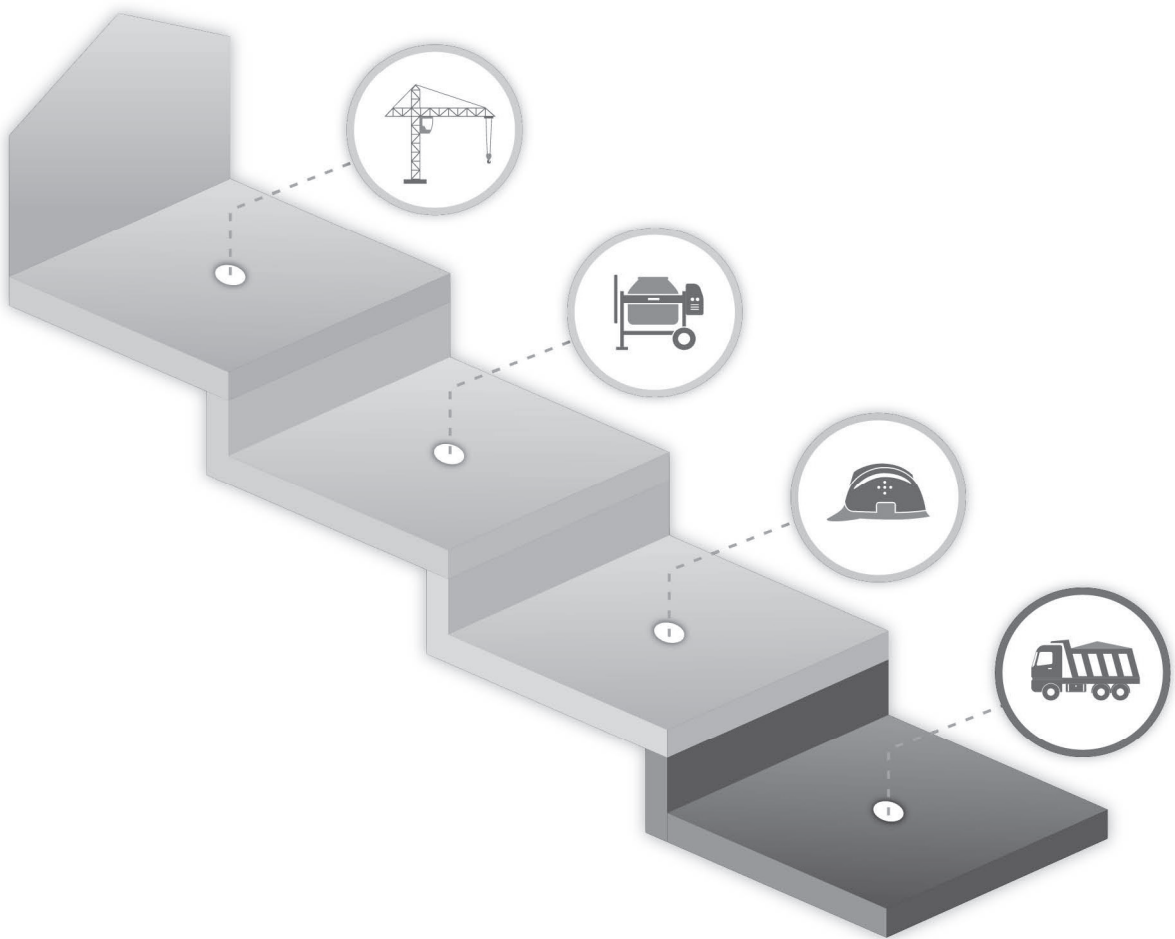
-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재 중 관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요	1
II. 상호협력평가 신청방법	7
III. 항목별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입력방법	15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17
2. 협력업자 관리대장 작성	19
3. 공동도급 실적 평가	22
4.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평가	27
5.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평가	34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2) 하도급 낙찰률	
(3)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4)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 전자하도급계약	
6. 협력업자 재무·교육지원 평가	45
(1) 협력업자 재무지원	
(2) 협력업자 교육지원	
7.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55
8. 상생협업체 운영실적 평가	60
9.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 실적 평가	64
10. 제재처분 감점	67
11. 사망사고 현장 평가	71
1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74
13.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가	80
14.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83
15. 신청내용 확인·제출 및 서류 출력	87
IV. 전산 프로그램 기능 안내	91
V. 참고자료	97
〈참고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99
〈참고2〉 평가 관련 기타 서식	129
〈참고3〉 2021년 평가기준 변경(안)	139

I. 상호협력평가 제도 개요





1 평가개요

(1) 목 적

-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2)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5호(2019. 7. 15.)

(3) 평가기관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일부 항목 공동 확인)

(4) 평가대상

- 전년도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전년도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 비건설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5) 평가기간

- 2020년 3월 ~ 6월

(6) 세부일정

순서	내 용	일 정
1	신청서류 접수 - 소속 시·도회 (회원), 본회 (비회원)	'20. 3. 2. ~ 3.16.
2	업체별 사실확인서류 요청 및 접수 -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확인	'20.4월 중순
3	업체별 평가결과 확인, 이의신청 접수 -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확인	'20.6월 중순
4	최종 평가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20.6월말
5	“평가결과 확인서 발급” 개시 - 평가결과 우대사항 등 적용	당년도 적용시작일 ~ 내년도 적용시작 전일

2 |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육성	57점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42점	신 설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32점	32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5점)	(5점)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④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⑤ 전자하도급계약	(4점)	(4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5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점	5점	
4. 신인도	13점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3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감점, 없으면 기본점수)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10점)	신 설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10점)	신 설
5. 가점	+11점	+11점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3점)	(+3점)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배점→가점
다.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5점)	(+5점)	신 설
총 계	100점	100점	



3 평가결과 우대사항

(1) 우대내용

- 공공공사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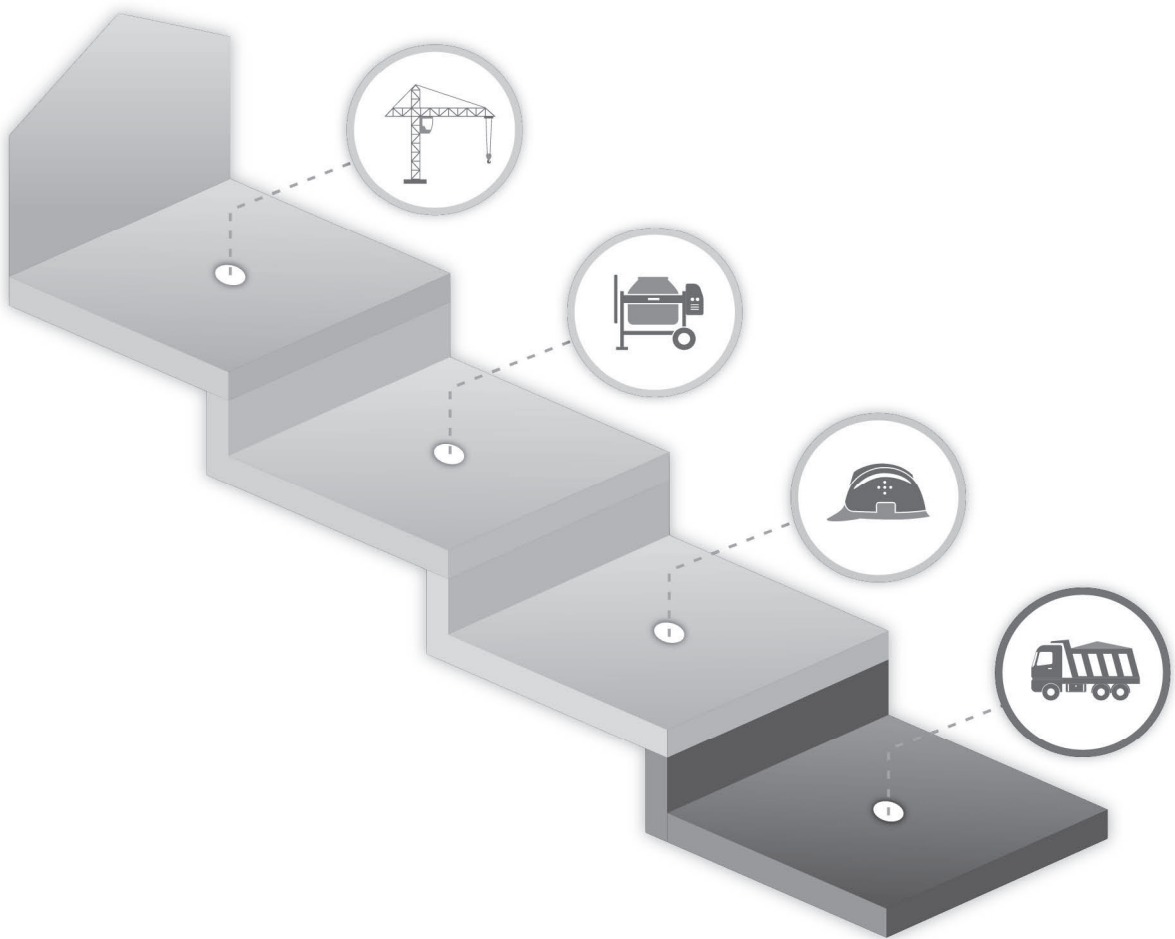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감 경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 평가액	건설법상 벌점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95점이상	3.0	0.60	2.0	3.0	0.5	6%	-0.5
90점이상 95점 미만	2.0	0.58					-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56	1.5	2.2	0.4	5%	-
70점이상 80점 미만	1.0	0.54	1.0	1.4	0.3	4%	-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52	0.5	0.5	0.2	3%	-

※ 60점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2) 우대기간

-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
 - 2020년 평가결과('20.6월말 예정) 적용 시작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적용 시작 전일까지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2020년 시공능력 평가시('20.7월말 예정)부터 다음년도 평가 전일까지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 2020년 평가결과 적용시작일부터 3년간

Ⅱ. 상호협력평가 신청 방법





1 신청업무 흐름도

업 무	세 부 내 용
1.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로그인	▷ http://siljuk.cak.or.kr 접속 ▷ 법인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 상호협력평가 신청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2. “상호협력평가 신청 프로그램” 접속	▷ http://sangho.cak.or.kr 접속 ▷ 법인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입력 · 확인, 전송 후 출력	▷ 사실확인서류 준비 ▷ 신청내용 입력 >> 내용확정(온라인전송) >> 신청서류 출력
4. 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3.16.까지 회원은 소속 시도회, 비회원은 본회로 제출 (우편제출 시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2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16.(월)

※ 신청 프로그램 상 내용 확정 및 온라인 전송, 신청서류(전산출력물 · 사실
확인서류) 제출이 기간 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평가신청 완료로 처리

3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1) 전 산 출 력 물	① 신청서 표지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③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대기업에 한함
	④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⑤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⑥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⑦ 협력업자 지원현황		
	⑧ 상생협의체 운영현황		
	⑨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실적 현황		
	⑩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⑪ 제재처분 받은 현황		
	⑫ 사망사고 발생 현황		
	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실적 현황		
	⑭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⑮ 협력업체별(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2) 사 실 확 인 서 류	공 통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p.28 참조
		②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p.21 참조
		③ 공동수급협정서 감지 (사본)	p.28 참조
		④ 상생협의체 협정서 등 상생협의체 운영 관련	p.61 참조
		⑤ 상호협력 관련 표창장 (사본)	p.64 참조
		⑥ 기술지원 관련	p.57 참조
	업 체 별 제 출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 낙찰률 관련	p.40 참조
		② 현금성 결제비율 관련	p.40 참조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관련	p.41 참조
		④ 전자하도급계약 관련	p.41 참조
		⑤ 재무지원 관련	p.50 참조
		⑥ 교육지원 관련	p.50 참조
		⑦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지급 관련	p.76 참조
		⑧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p.84 참조



(1) 전산출력물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프로그램(<http://sangho.cak.or.kr>)의 “전체메뉴 >> 서류출력 >> 전체출력(버튼)”에서 일괄 출력 가능
- ‘⑮ 협력업체별(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의 연번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해당 매입 항목 우측에 기재하여 제출
 - 해당 협력업체(사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현황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그 이유를 함께 기재
(예 : “대표사 발행” 또는 “일부만 발행” 등)

(2) 사실확인서류

- 공통 서류는 모든 평가 신청업체가 3월 16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일부 누락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 업체별 제출 서류는 4월 중 개별 업체별로 개별 통보되는 서류로서 협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
 - 평가신청시 등록한 담당자에게 SMS 통보 및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http://siljuk.cak.or.kr>)’을 통해 별도 공지
 - 서류제출기간이 짧으므로 협회에서 요청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사전에 서류 준비 요망

4 유의사항

(1) 제출 후 수정불가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는 협회에 3월 16일까지 제출 후 추가 또는 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제출 이전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의 내용과 온라인 전송자료가 다를 경우, 협회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확인 후 제출 요망

(2) 제출기한 이후 제출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기간 내 제출된 건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기한 이후 제출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해당항목 “0”점 처리)

(3) 허위작성 서류 제출시 제재조치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 신청한 자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등 입·낙찰시 우대 중지 (조달청 통보 조치 등)

(4) 차년도 평가 대상 성실신고 요망

- 이월되는 공사(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는 다음년도 상호협력평가지 반영되며, 당년도 제출·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평가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성실 신고 요망

(5) 사실확인서류 원본 제출 및 사전 준비 요망

- 각 사실확인서류는 특별히 사본 제출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



5 서류 제출처

(1) 회 원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도회	주 소	홈페이지
서울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건설회관) (우) 06050	www.scak.or.kr
부산시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 701호 (부산디자인센터) (우) 48059	cak.or.kr/city/busan
대구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4 (우) 41250	cak.or.kr/city/daegu
인천시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송도센트로드 B동25층) (우) 22007	cak.or.kr/city/incheon
광주시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1호(제일오피스텔) (우) 61478	cak.or.kr/city/kwangju
대전시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 (우) 35214	cak.or.kr/city/daejun
울산시회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우) 44417	cak.or.kr/city/ulsan
경기도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3층(건설회관) (우) 16272	www.kcak.or.kr
(북부출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 21(가연타워 1101호) (우) 11651	
강원도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2층(건설회관) (우) 24217	cak.or.kr/city/kangwon
충북도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8번길 29, 3층 (우) 28516	www.cbca.or.kr
충남·세종시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센트럴타워4층) (우) 32256	cak.or.kr/city/chungnam
전북도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우) 54984	cak.or.kr/city/jeonbuk
전남도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한국시멘트빌딩 4층) (우) 61228	cak.or.kr/city/jeonnam
경북도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우) 42020	cak.or.kr/city/kyungbuk
경남도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26, 4층(건설회관) (우) 51388	cak.or.kr/city/kyungnam
제주도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9층(건설회관) (우) 63125	cak.or.kr/city/cheju

(2) 비회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상호협력평가팀 (우) 06050

6 문 의 처

(1)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회원사 문의처)

시·도회	전화번호	시·도회	전화번호
서울시회	(02) 3218-9123	강원도회	(033) 254-2912
부산시회	(051) 906-9000	충북도회	(043) 253-7496~7
대구시회	(053) 751-6601~3	충남·세종시회	(041) 633-3000
인천시회	(032) 439-7272~3	전북도회	(063) 288-3881~2
광주시회	(062) 232-5601~2	전남도회	(062) 511-4001~5
대전시회	(042) 486-0881~4	경북도회	(053) 755-5007~9
울산시회	(052) 244-6500	경남도회	(055) 288-7001~5
경기도회	(031) 253-4551~5 (031) 878-4550~3	제주도회	(064) 746-2503

(2) 대한건설협회 본회 (비회원사 문의처)

담 당	전화번호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02) 3485 - 8242~7

(3) 전자공인인증서 로그인 (발급, 갱신, 오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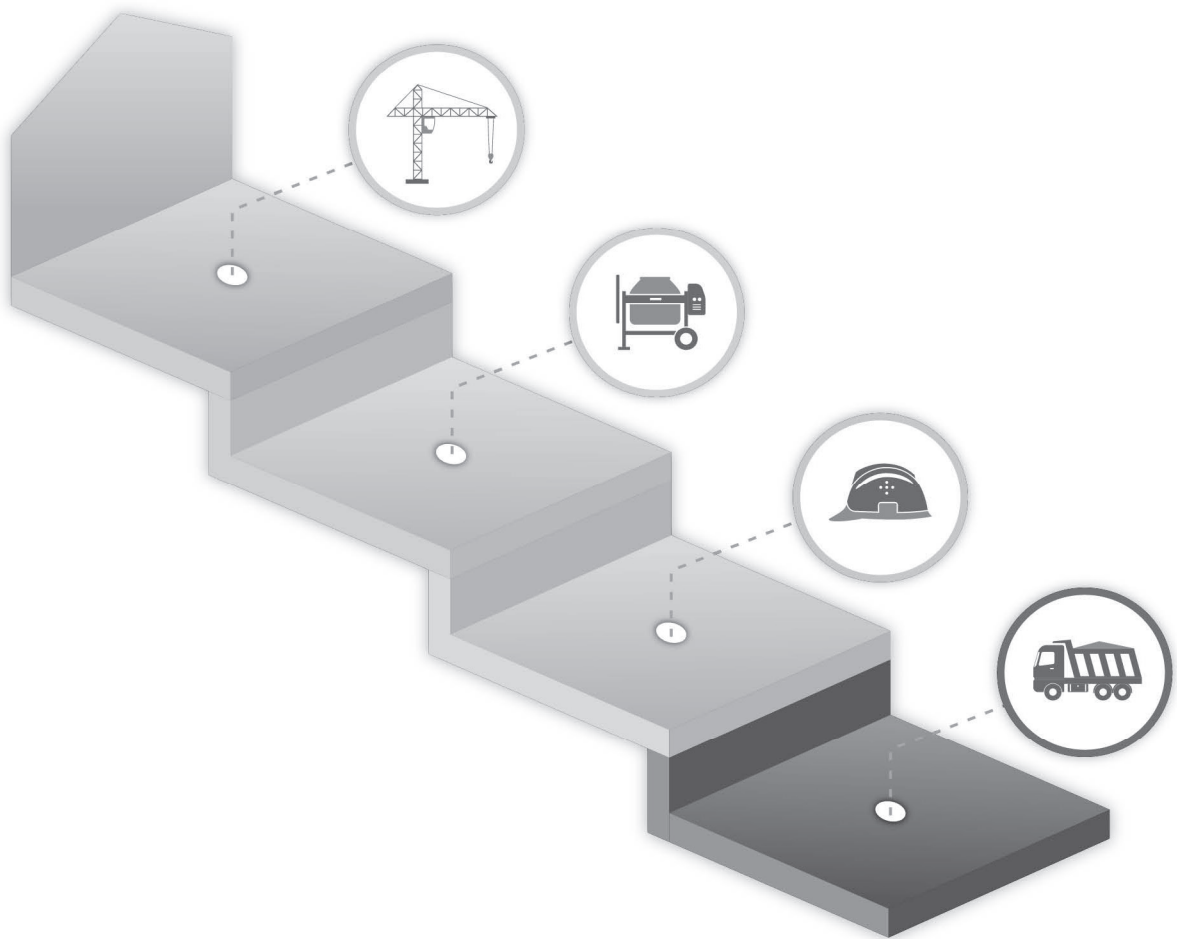
업체명	전화번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1688-2370

※ 공인인증서 관련 사항은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직접 문의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할인 안내

- ▷ 협회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사 등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할인(66,000원) 서비스 제공
- ▷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http://cert.cak.or.kr>)에서 "공인인증서발급" 배너 클릭
 - ※ G2B 등 공공기관 전자입찰 및 협회 홈페이지(홈페이지,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하도급직불신청, 인터넷 증명발급 등) 이용시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Ⅲ. 항목별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입력방법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가. 개 요

- 상호협력 신청사 및 작성담당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홈텍스 자료의 협회 전송 여부를 확인

* 상호협력관계 평가 중 사실확인서류 요청사항이나 평가결과 통보사항은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유선 또는 SMS로 통보

나. 프로그램 입력요령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전체메뉴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2.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체 관리대장

상호협력 신청사 및 작성담당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홈텍스 자료의 협회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체 정보 갱신
조회
저장
삭제

업체개요

상호	주식회사 대한건설	대표자	김건설	기업규모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616-88-12314	법인등록번호	222222-2222222	전화번호	02-3485-8200 *(예) 02-000-0000
본사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3길 21 - 0				
건설업등록번호	토건 111111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222222

작성담당자

소속부서명	업무부	직위 및 성명	대리 홍길동 *(예) 대리 홍길동	전화번호	02 - 1111 - 1112
휴대폰 번호	010 - 2222 - 3333	이메일	skddd@naver.com		

홈텍스 온라인전송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송하세요

* 부가세신고(매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왼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용절차 안내 (프로그램 관련 문의: 02-2122-2536 나이스D&B)
* 자료전송클릭 → 동의 → 공인인증서 인증 → 자료전송 → 전송내역 조회

개인보호정책

약관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해당 시스템의 활용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해당 서비스관련 상담, 불만처리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업체개요' 중 본사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입력
 - 만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등록번호 등 자사의 업체개요 사항과 다를 경우 협회 각 시·도회(비회원사 포함)에 문의

-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 버튼 클릭시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자료를 협회로 온라인 전송 가능**
 - 온라인 전송시 하도급 기성실적 평가 사실확인서류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필요
 - ※ 신청사의 자료 제공 동의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직접 자료 전송

- '업체개요', '작성담당자' 미입력시 또는 '개인보호정책 약관' 미동의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2 협력업자 관리대장 작성

가. 개 요

- 상호협력평가의 대상이 되는 당년도 협력업자의 정보를 입력

나. 협력업자 인정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만 협력업자로서 인정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비건설업자이므로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협력업자 중 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에 한함
 - 단, 신청사가 '대기업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종합건설업자도 협력업자로 등록 가능

👉 대기업인 건설업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19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6,000억원 이상인 업체)

< 신청사의 규모별 협력업자의 인정범위 >

신 청 사	협력업자 인정	협력업자 불인정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건설관련공사업*을 등록한 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건설관련공사업*을 등록한 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공사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시공업 등



① 추 가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협력업자를 추가 등록
 - “상호” 우측  을 클릭하여 업체명을 검색 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가 자동 입력됨
 - 만일, 검색되지 않는 협력업자라면 직접 입력 후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제출시 ('19.3.2.~3.16.) 해당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비건설업자로 간주하여 협력업자 및 하도급실적 등이 인정되지 않음
- ※ 신청 프로그램상에서 검색되지 않는 업체 목록은 배경색이 노랑색으로 표시됨

② 업 종

- 협력업자는 업체가 아닌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 있는 업종 단위로 등록
- ※ 한 법인이 여러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한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 가능

③ 협력업자 등록일자

- 2019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일자(캘린더에서 날짜선택)를 입력
- 협력업자는 연도별로 등록·관리되므로 전년도 협력업자이더라도 금년도 등록일자를 입력하여야 함
- 우측 상단의 ‘등록일 변경’으로 등록일자 일괄 입력 가능

④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자동 입력)

- 동일 법인이라도 직전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업종과 다를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전년도 협력업자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는 직전년도 신고 내용에 따라 자동 입력되며,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는 수정할 수 없음

3 공동도급 실적 평가

가. 개 요

-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한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협력업자와 함께 시공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 (배점 : 대기업 10점)

나. 평가방법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건수 ① 공동도급 실적 건수	60%이상	5
		50%~60%미만	4
		40%~50%미만	3
		30%~40%미만	2
		30%미만	0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④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③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30%이상	5
		25%~30%미만	4
		20%~25%미만	3
		10%~20%미만	2
		10%미만	0

▶ ‘가’, ‘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 단, 당년도 자사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 ‘1점’ 부여

① 공동도급 실적 건수

-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자사의 공동도급 현장수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평가받은 결과에 따라 판단 ('20.5월말 확정)
- 자사가 당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에 따라 대기업으로 신규 편입된 경우에는 새로운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이후('19.8.1.~) 체결된 공사만을 대상으로 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건수

- ①에 따라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에 포함된 현장 중 **협력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기성실적이 발생한 건수
- ‘전년도에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 전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해당 공동도급 실적 건수를 인정
- 공동도급 구성사가 공동도급 계약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기업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도급 실적도 인정 가능

③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 ②에 따른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을 합산

④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 ②에 따른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을 합산

다. 사실확인서류

- 별도 추가 제출 필요서류 없음

참 고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평가 예시

▶ 당년도 신청업체 공동도급 기성실적 현황

공 사 명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공동도급 구성사		비 고
		회사명	당년도 기성액	
OO 공사 (계약일자 : '18. 8. 1.)	70억	A건설(주)	15억	'19.9.1. 협력업자 등록, '18년 협력업자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포함
		B건설(주)	10억	'19.9.1. 협력업자 등록, '18년 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C건설(주)	5억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공사 (계약일자 : '19. 10. 1.)	40억	D건설(주)	10억	'19.9.1. 협력업자 등록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포함
XX 공사 (계약일자 : '19. 5. 1.)	50억	E건설(주)	50억	협력업자등록일 : '19.9.1일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 ➡ (1)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3건
 (2)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2건 (OO 공사, △△공사)
 (3)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 110억 (70억+40억)
 (4)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 25억 (15억+10억)

▶ 평가기준에 따른 비율산정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 2건^{2)} / 3건^{1)} = 66.7\% \Rightarrow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25억^{4)} / 110억^{3)} = 22.7\% \Rightarrow 3점$$



라. 프로그램 입력요령 (신청사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페이지 자동 실행)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 중 공동도급으로 신고한 공사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되며(첫 1회에 한함),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공동도급 내용에 맞게 추가 또는 수정

전체 메뉴 < 2.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

공동도급 공사에 함께 참여한 협력업자와 자사 및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은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1 추가 구성사추가 수정 삭제 출력

공동도급한 건수 : 3건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건수 : 3건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액 합계 : 1,300백만원 | 협력업자의 기성액 합계 : 400백만원

업종: 공사명: ☐ 전체선택

순번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기성액		중복여부	당년도협력업자	전년도협력업자	업종	상호	당년도기성액	매외
					총공사	산생지자분							
☐ 1	2018-0001	공사1	2018-01	2019-12	600	500	N	Y	Y	토공	(주)남경연지니얼토건	100	N
☐ 2	2018-0003	테스트18	2017-01	2019-09	600	500	N	Y	Y	강구조물	세진기업	100	N
☐ 3	2019-0005	테스트5	2019-11	2019-11	500	300	N	Y	Y	가스시공	(유)가림연지니얼형	200	N

전체 3건 (1 ~ 3) ◀ 1 ▶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전체 메뉴 < 2.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

공동도급 공사에 함께 참여한 협력업자와 자사 및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은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구성사추가 수정 삭제 출력

공동도급한 건수 : 3건 | 자사의 원도급신고내역별 기성실적 자료편집 자외 기성액 합계 : 400백만원

업종: 공사명: ☐ 전체선택

순번	신고번호	공사명
☐ 1	2018-0001	공사1
☐ 2	2018-0003	테스트18
☐ 3	2019-0005	테스트5

전체 3건 (1 ~ 3)

자사의 원도급신고내역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 총공사기성액

기성액 ⑤ 자사가성액

발주자명

④ 중복여부

※신고번호는 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공동도급구성사 구성사추가

당년도협력업자여부

업종

상호

건설업등록번호

전년도협력업자여부

당년도기성액

③ 매외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① 추 가

-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발주자명, 공동도급 전체에 대해 '19년도 당년도 기성액(전체 및 자사 지분) 입력

② 구성사 추가

- 기 입력한 해당 공동도급 공사건에 대해 자사를 제외한 공동도급 구성사 정보만 추가 입력
 - 구성사가 협력업자인 경우 ‘상호’ 우측 🔍 을 클릭하면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의 상호를 클릭하여 ‘상호’, ‘업종’,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건설업등록번호’를 자동 입력 가능

③ 예 외

- 공동도급 구성사가 현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계약체결시 중소기업이었던 경우로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되었던 경우라면 해당 공동수급자에 예외란에 “Y”로 체크
 - 체크하는 경우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총액으로 자동 계산됨

④ 중복 여부

- 하나의 원도급에 대해 각각 다른 건으로 실적 신고한 경우 별건이 아닌 1건으로 인정되기 위해 “Y”로 체크

.....
【예시】 A현장의 토목공사와 A현장의 건축공사를 별건으로 신고한 경우 ‘중복’으로 체크하면 1건으로 인정됨

⑤ 자사 기성액

- 해당 공사 기성액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당년도 기성액을 입력



4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평가

가. 개 요

- 신청사의 기성실적 중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의 기성실적의 비율을 평가
(배점 : 대기업 20점, 중소기업 25점)

나. 평가방법

산정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실적 ① 총기성실적	45%이상	20	40%이상	25
	35%~45%미만	15	30%~40%미만	20
	25%~35%미만	10	20%~30%미만	15
	15%~25%미만	5	10%~20%미만	10
	15%미만	0	10%미만	0

① 총기성실적

-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통해 인정된 ‘국내 기성액 합계’로 산정(‘20.5월말 확정)
- 단,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실적은 총기성실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실적’에 종합건설업자인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총기성실적에도 동 금액을 합산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실적

-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 해당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을 합산
- 하도급 실적에 대한 당년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전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 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하도급 실적을 인정

■ 당년도에 원도급 실적이 발생한 건설공사에 한해 하도급 실적 인정

- 당년도 원도급 기성실적의 미발생(발주자로부터 선금금만 지급받은 경우 포함)으로 ‘① 총기성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정 불가

다만, 차년도에 해당 공사의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당년도에 불인정되었던 하도급 실적을 차년도 하도급 실적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차년도에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당년도 중 원도급공사 준공 등)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공사에 대한 차년도 1분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까지 당년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신청사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 인정

■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기성실적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 실적도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실적도 인정

- *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다. 사실확인서류

- ㉠ 세무서에 제출한 “2019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은 원본 제출

- 반드시 연간기준(2019.1.1.~12.31.)으로 작성 제출 (분기별 자료 제출 금지)
- 자체기장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확인자 날인 없이 우선 제출하고, 추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20.4.24.까지 제출
- ※ 홈택스 자료 온라인 전송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필요

- ㉡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다음 서류 제출(대표사, 구성사 모두 제출)

-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또는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해당부분에 밀줄 표시)



라. 전산 입력요령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원도급공사 현황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첫 1회에 한함), 원도급공사별로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을 각각 입력

전체메뉴 <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을 입력합니다
(노란색 음영 목록은 하도급 기성액이 0인 공사)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하도급추가 1 수정 삭제 출력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6건 | 당년도하도급기성실적건수(신규하도급계약) : 5건 전체 하도급건수 : 8건 | 당년도기성실적 합계 : 1,183백만원

20 업종: 공사명: 전체선택

순번	원도급공사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하도급공사(백만원)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공공사	총계약액				기성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 1	2018-0003	아파트신축공사	2017-01	2019-09	N	1,000	0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407-81-08712	2017-11-01	2019-08-06	33	0
☐ 2	2018-0008	관리관리	2017-08	2020-12	N	1,500	0 금속창호 (주)발트에이	101-81-17652	2019-11-11	2019-11-29	200	0	
☐ 3	2018-0010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	2018-02	2019-09	Y	1,365	0						
☐ 4	2018-0020	기술인회관	2018-11	2019-11	N	2,000	1,000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407-81-08712	2019-05-06	2019-09-17	500	500
☐ 5	2018-9002	테스트공사전행중	2010-01	2019-01	Y	400	10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407-81-08712	2019-01-03	2019-01-22	300	50
☐ 6	2019-0001	테스트1	2018-02	2019-11	N	10	500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12-81-36401	2019-11-06	2019-11-20	40	0	
☐ 7	2019-0005	삼산동 근린생활시설 신...	2019-01	2020-01	Y	10,000	600 기계설비 아이더블유아이(주)	113-81-43565	2019-11-06	2019-11-30	100	100	
☐ 8	2019-0010	테스트테스트테스트	2019-11	2020-11	Y	555	555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12-81-36401	2019-11-01	2019-11-25	3,333	56	

전체 8 건 (1 ~ 8)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산정

전체메뉴 <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을 입력합니다
(노란색 음영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자료원입)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6건 | 당년도하도급기성실적건수(신규하도급계약) : 5건 전체 하도급건수 : 8건 | 당년도기성실적 합계 : 1,183백만원

업종: 공사명: 전체선택

원도급공사

1 신고번호

2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자사분)

계약유형

3 (자사지분율)

공공공사여부

발주자명

4 자기공사여부

비고

※ 신고번호는 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하도급공사

6 하도급추가

업종

4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5 당년도총기성액

당년도기성액 (자사분)

7 하도급스태임쳐별 합계금액

※ 당년도 원도급 기성액이 0 이거나 불인정 받은 경우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추가 수정 삭제 출력

당년도기성실적 합계 : 1,183백만원

하도급공사(백만원)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기성액 (자사분)
2017-11-01	2019-08-06	33	0
2019-11-11	2019-11-29	200	0
2019-05-06	2019-09-17	500	500
2019-01-03	2019-01-22	300	50
2019-11-06	2019-11-20	40	0
2019-11-06	2019-11-30	100	100
2019-11-01	2019-11-25	3,333	56

저장 닫기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산정

① 수정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원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 내역 모두 입력

② 공사명

- 당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원도급공사의 공사명을 입력
 - 우측 🔍 을 클릭하면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 기성액(자사분)’를 자동 입력 가능

③ 계약유형 (자사지분율)

- 공동도급 공사가 아닌 경우 ‘단독’을 선택하고,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방식 중 선택
 - ‘공동이행’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자사의 지분율을 추가 입력해야 하며, ‘0%’ 또는 ‘100%’을 입력한 경우 저장되지 않음

④ 상호

- 하도급공사를 시공한 협력업자의 업종을 선택 후 “상호” 우측 🔍 를 클릭하여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해당 협력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이 자동 입력됨

⑤ 당년도 총 기성액

- 해당 원도급공사에서 발생한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 기성액을 입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하도급 기성액을 입력하면 자사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기성액이 자동 계산되어 “당년도 기성액(자사분)”에 입력됨
- 2019년도에 2건 이상의 원도급공사 차수계약이 발생하고 하도급계약은 총괄 계약한 경우 하도급 기성액을 한쪽 차수로 합쳐서 입력 가능



⑥ 하도급 추가

- 기 입력된 해당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추가 입력시 사용
- 해당 원도급 공사를 선택 후 하도급추가 버튼 클릭하여 협력업자 및 하도급 공사내역 입력 후 저장

⑦ 홈텍스 매입처별 합계금액

-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산 연계하여 해당 협력업자(사업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표시됨
 - 하도급공사의 “당년도 총 기성액”(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자사분의 당년도 기성액”)이 홈텍스 매입처별 합계금액이 이상인지 비교 확인
- ※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한도로 인정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과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협력업자 사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확인 가능

전체 메뉴 <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별 출력’을 클릭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내용과 대조·확인)

조회 출력 **사업자번호별 출력**

하도급 건수 : 8건 | 하도급기성실적 합계 : 1,183백만원

20 업종: 공사업:

순번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하도급실적	
						하도급건수	하도급기성액(백만원)
1	장구조물	(주)건원건설	212-81-36401	송파-02-21-03	Y	2	533
2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407-81-08712	140516	Y	3	550
3	금속창호	(주)빌트메이	101-81-17652	83-11-265	Y	1	0
4	기계설비	아이더블유아이(주)	113-81-43565	구로97-12-11	Y	1	100

전체 8건 (1 ~ 8)

1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

-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입력한 자료를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도급실적을 자동 집계하여 협력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순서대로 하도급실적이 조회, 출력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상호·대조 확인용으로 활용
 -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 자료 상의 순번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해당 목록 우측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 자료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에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
(예 : “대표사 발행”, “일부만 발행” 등)



참 고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1. 원도급 미기성분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지급으로 인해 당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의 총기성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서 제외함
- 하도급실적은 $\frac{\text{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text{총기성실적}}$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총기성실적(분모)에 포함되지 않는 하도급실적(분자)은 제외

2.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한 경우,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하고 하도급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
 - 단,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실적은 자사 총기성실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frac{\text{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text{총기성실적}}$ 산식의 분모, 분자에 동시 합산 필요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간,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간은 상호협력 평가시 협력업자로 인정 불가

5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평가

가. 개 요

- 공정한 하도급거래 유도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낙찰률,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전자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을 평가 (배점 : 30점)

나. 평가방법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	$\frac{\text{②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text{① 신규 하도급 건수}}$	70%이상	10
		50%~70%미만	8
		30%~50%미만	6
		10%~30%미만	4
		10%미만	0
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합계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 합산	120건이상	10
		80건~120건미만	8
		50건~80건미만	6
		30건~50건미만	4
		3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신규 하도급 건수

- 당년도 협력업자와의 신규 하도급계약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 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 건수 중 발주자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하도급건수
 - 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의 확인 없이 해당 건을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 건수’로 인정
 - ※ 공공발주자는 하도급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건산법 제31조제2항)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30호('19.6.27.) >

-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 ▷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2) 하도급 낙찰률

산정방법	③ 평가기준	점수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90%이상	5
	86%이상~90%미만	4
① 도급계약액 중 협력업자의 하도급부분금액 총액	82%이상~86%미만	3
	82%미만	0

① 도급금액 중 협력업자 하도급부분금액 총액

- 당년도에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하도급부분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의 계약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0’인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건도 포함

③ 평가기준

- 산정방법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하도급 낙찰률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단,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된 공사가 전체 신규 하도급계약 공사건수의 70% 이상이거나 120건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점 부여
- *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된 결과를 적용

(3)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②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① 신규 하도급건수	30%이상	8
		20%~30%미만	6
		10%~20%미만	4
		5%~10%미만	3
		5%미만	0
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합계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합산	50건이상	8
		40건~50건미만	6
		30건~40건미만	4
		20건~30건미만	3
		2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신규 하도급건수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전부를 법정기일 전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으로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초과한 하도급계약의 건수**

$$* \text{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 \frac{\text{당년도에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text{당년도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상 금액}}$$

$$** \text{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 \frac{\text{당년도에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수령한 원도급대금}}{\text{당년도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상 금액}}$$

- 단, 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에 포함

- 종합건설업체인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협력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인”으로, “원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으로, “하도급대금”은 “재하도급대금”으로 간주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하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 **현금성 결제 인정범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현금,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4)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비율	②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① 신규 하도급건수	30%이상	5
		20%이상~30%미만	4
		10%이상~20%미만	3
		5%이상~10%미만	2
		5%미만	0
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합계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합산	50건이상	5
		40건이상~50건미만	4
		30건이상~40건미만	3
		20건이상~30건미만	2
		2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신규 하도급건수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도래 전 (원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도급 기성·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9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수
 - 종합건설업체인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협력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인”으로, “원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으로, “하도급대금”은 “재하도급대금”으로 간주

☞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정기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도 포함
 - 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 후 발주자·협력업자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기 수령한 선급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5) 전자하도급계약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전자하도급계약 건수 ① 신규 하도급건수	50%이상	4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2
	20%이상~30%미만	1
	20%미만	0

① 신규 하도급건수

-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② 전자하도급계약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수

☞ 전자계약시스템

- ▷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 계약당사자간 직접 방문 없이 양지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조회 및 출력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다. 사실확인서류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 공공공사 >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계약 관련 보증서,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con 건설 공사대장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

< 민간공사 >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계약 관련 보증서,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con 건설 공사대장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 ㉡을 1set로 제출

(2) 하도급 낙찰률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계약 관련 보증서,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con 건설 공사대장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 ㉡을 1set로 제출

(3)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의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의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 ㉡, ㉢, ㉣을 1set로 제출

-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 계산서’사본으로 ㉠~㉣ 대체 가능



(4)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실적

-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
내역 확인서류 (수령일자 및 수령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확인서류 (지급일자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 ㉠,㉡,㉢,㉣을 1set로 제출
-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사본으로 ㉠~㉣ 대체 가능

(5) 전자하도급계약 실적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 하도급계약서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 서류)
- ⇒ ㉠,㉡을 1set로 제출

라. 전산 입력요령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과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을 바탕으로 협력업자와의 신규 하도급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하도급계약별로 계약 체결·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 입력

전체 메뉴 <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

①대금 지급 적정성, ②하도급률, ③현금성 결제비율, ④대금 조기지급, ⑤전자하도급계약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노란색 음영 목록은 ①, ②, ③, ④, ⑤ 모두 미입력된 공사)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1 수정 삭제 출력 공공공사선택하기

하도급대금 적정성: 3건 | 전체하도급률: 미입력 | 현금성 결제비율: 0건 |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0건 | 전자하도급계약: 0건 전체 건수: 6건

20 업종: 공사명: 전체선택

순번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하도급 대금지급의 지급시기등의 적정여부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공공공사	자기공사	업종	상호	계약일자	당년도기성액	대금적정	하도급률	현금성결제	조기지급	전자계약
1	2018-0008	관리관리	2017-08	N	N	금속상호	(주)발트에이	2019-11-11	0	N		N	N	N
2	2018-0020	기술인화관	2018-11	N	N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2019-05-06	500	N	91	N	N	N
3	2018-9002	테스트공사전행중	2010-01	Y	N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2019-01-03	50	Y	100	N	N	N
4	2019-0001	테스트1	2018-02	N	Y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019-11-06	100	N		N	N	N
5	2019-0005	삼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019-01	Y	N	기계설비	아이더블유아이(주)	2019-11-06	100	Y	100	N	N	N
6	2019-0010	테스트테스트테스트	2019-11	Y	N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019-11-01	200	Y	75	N	N	N

전체 6건 (1 ~ 6)

전체 메뉴 <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편집

①대금 (노란색 음영)

* 원도급공사 *

신고번호 2018-0020 공사명 기술인화관 계약액 2,000 당년도기성액 1,000 계약년월 2018-11 공공공사 자기공사

* 하도급공사 *

업종 건축 상호 (유)동명종합건설 사업자등록번호 407-81-08712 계약일자 2019-05-06

준공일자 2019-09-17 계약액 500 당년도기성액 500

※기성액이 0인경우 현금성결제비율,조기지급여부 입력불가

*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등의 적정성 *

② 하도급대금 적정여부 ☐ ③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액 /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500 / 550 = 91 %
※ 전체 신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금액 미입력건이 있는 경우 "하도급 낙찰률" 평가 점수 산정 불가

④ 하도급대금적부 ☐ ⑤ 하도급대금 결제수단 --선택--

하도급대금 지급유형: 선금결제외 하도급대금적부 (선금금 수령 및 지급내역 필수입력)

⑥ 현금성결제비율 우수여부 ☒ 현금성결제비율(A/B):
- 하도급(A) = 현금지급액 (선금금) / 하도급계약액 = / 500 = %
- 원도급(B) = 현금수령액 (선금금) / 원도급계약액 = / 2,000 = %

⑦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여부 ☐ 원도급대금 (선금금) 수령여부: ☐ 하도급대금 (선금금) 조기지급액: 0 (단위:백만원)
최초수령일 최종수령일 최초지급일 최종지급일
수령횟수: 0 지급횟수:

⑧ 전자하도급 계약여부 ☐ 전자계약시스템명:

CAK **대한건설협회** < > 저장 닫기



① 수 정

- 공사목록에서 1건 공사를 선택 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입력화면이 나타나면 내용 입력

② 하도급대금 적정 여부

-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 적정 여부에 체크
 - 공공공사에서의 신규 하도급계약인 경우
 - 민간공사에서의 신규 하도급계약인 경우로서 발주자 및 하수급인 모두가 해당 하도급건의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경우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하도급대금 적정 여부 평가대상에서 제외

③ 하도급률

-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금액’을 입력하면 하도급률이 자동 계산됨 (자기공사는 입력 불필요)
 - 모든 공공·민간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해 입력해야 하며, 신규 하도급계약 중 입력이 누락된 계약건이 있는 경우 전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낙찰률” 평가시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것으로 간주하여 점수 산정

④ 하도급대금 직불

- 선급금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체크
 - 하도급대금 직불에 체크하는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 여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여부가 자동 체크됨

⑤ 하도급대금 결제수단

- 현금, 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외담대, 현금성과 어음 혼용 중 택일

⑥ 현금성결제비율 우수 여부

- 하도급대금 모두에 대해 현금성결제비율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크
- 하도급대금 지급 유형을 다음 중 택일
 - 선급금 제외 하도급대금직불
 - ※ 신청사가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직불을 합의한 경우 선급금에 대해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 여부를 평가하므로, 원·하도급의 선급금 수령 및 지급내역 필수 입력
 - 100% 현금성결제수단 지급
 - 어음, 현금성 혼용 지급
- 하도급대금 중 현금성 지급액, 원도급대금 중 현금성 수령액을 입력하면 현금성 결제비율이 자동 계산되며, 현금성결제비율(A/B)가 100% 초과인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건으로 인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이 '0'인 경우는 현금성 결제비율 평가대상에서 제외

⑦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여부

- 하도급대금 모두에 대해 조기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크
- 당년도에 해당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원도급대금과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최초·최종결제일을 입력하고, 총 수령·지급횟수를 입력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이 '0'인 경우는 조기지급 평가대상에서 제외

⑧ 전자하도급계약 여부

- 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체크하고, 전자계약시스템명 입력



6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평가

가. 개 요

- 협력업자에 대한 재정 및 교육 지원 실적을 평가 (배점 : 10점)

나. 평가방법

(1) 협력업자 재무지원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②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계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산	100개사이상	5
		70개사이상~100개사미만	4
		40개사이상~70개사미만	3
		20개사이상~40개사미만	2
		20개사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 2019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설업자의 총 “업체수”를 적용
 - 하나의 업체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
【예시】 토공사업자 ‘A건설(주)’과 포장공사업자 ‘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경우 총협력업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②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 아래 인정 유형에 따라 1개 협력업자 업체별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 이상’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합산
- － 하나의 협력업자와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하나의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재정지원 업체수에 포함

【예시】 토공사업종과 포장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A건설(주)’과 각 업종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공사에 대해서만 원도급대금 수령 없이 하도급대금 1백만원을 우선 지급한 경우 ‘A건설(주)’는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에 포함

👁 재무지원 인정 유형

- ㉠ 협력업자에게 업체당 하도급대금외 1백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기자재 등)을 지원한 경우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한 경우
- ㉢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지세액 중 70%이상을 자사가 부담한 경우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의 인지세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총 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지원 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인정

하도급계약액	지원 인정금액
1천만원 이상	6만원
3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별 수수료 등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총 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지원 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인정

하도급계약액	지원 인정금액
4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2) 협력업자 교육지원

구 분	④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임직원수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합산	협력업체 1,0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미만	5 4 3 2 0
		200인 이상	160인 이상	120인 이상	
		160~199인	120~159인	70~119인	
		120~159인	80~119인	40~69인	
		80~119인	40~79인	20~39인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 2019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설업자의 총 “업체수”를 적용
 - 하나의 업체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 아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위탁교육(㉔)을 지원한 협력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전문공사 업종별로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였더라도 지원업체수는 1개로 인정

【예시1】 토공사업자 ‘A건설(주)’과 포장공사업자 ‘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2회에 걸쳐 교육 지원한 경우, 교육지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예시2】 협력업체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직원 2인을 교육 지원하더라도 교육지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지원시 인정 가능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아래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㉞)을 지원한 임직원수 합산

.....
【예시1】 협력업체인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임직원 2인에 대해 교육지원한 경우 2명에 해당

【예시2】 협력업체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임직원 1인을 여러번 교육지원한 경우 1명에 해당

④ 산정방법 관련 우대사항

- 상반기(1~8월) 교육 참여시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및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가중치 1.2배**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합산
- 아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법정윤리교육(㉟)**에 신청업체 소속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 인원수의 **3배**를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또는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합산

.....
【예시1】

총협력업체 법인수 100개사이며, 상반기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10명인 경우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 \frac{24\text{개사} (20 \times 1.2\text{배}) + 36\text{개사} (10 \times 1.2\text{배} \times 3\text{배})}{100\text{개사}} = 60\% \Rightarrow 5\text{점}$$

【예시2】

총협력업체 법인수 1,000개사이며, 하반기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50명인 경우
 나.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20\text{명} + 180\text{명} (50\text{명} \times 1.2\text{배} \times 3\text{배}) = 200\text{명} \Rightarrow 5\text{점}$$

.....



☞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

▷ 협력업자 등이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 (㉠, ㉡ 중 선택)

구분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위탁교육)	㉡ 건설업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법정윤리교육)
교육 대상	협력업체 임원 또는 직원	신청업체 자사 임직원 또는 협력사의 임원
교육 기관 및 과정	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교육훈련과정*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 교육, 정기 안전교육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불인정 - 「건설법」, 「하도급법」 과목을 각각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명이 명기되어야 함 - 온라인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이수한 경우만 인정 * http://www.hrd.go.kr 훈련정보 (기업과정) 중 “건설” 직종에서 검색	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윤리교육 - 신규 건설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또는 영업정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

▷ 자사가 교육실비를 부담

- 자사가 교육기관에 실제 납부한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형태 모두 인정
-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에 있어 공동수급체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가 해당 협력업체를 교육지원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나, 구성사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교육비 지원이 확인되어야 함

다. 사실확인서류

(1) 협력업자 재무지원

재무지원 유형	제출서류
업체당 하도급대금 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 지급	㉠ 원·하도급 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사유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내용·날짜·금액이 명시되고 원·하도급사 날인한 원본 제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	㉠ 원·하도급 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KISCON 건설공사대장 (원도급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원·하도급계약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인지세 70% 부담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하도급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서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하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	㉠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 하도급사의 하도급이행보증서 발행 내역 ㉢ 보증서 면제 사유서

(2) 협력업자 교육지원

㉠ 교육참가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재직여부 확인) ㉡ 교육기관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적정 교육기관 여부 확인) - 온라인 교육인 경우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교육비 납부내역, 참석자, 교육내용, 수료여부 등 확인 가능 서류) ㉤ 자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교육비 이체 통장사본 등 확인서류 ㉥ 공동도급의 경우로서 ㉢ 또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교육지원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 서류 ⇒ ㉠,㉡,㉢,㉤,㉥을 1set로 제출 · ㉠,㉡,㉢을 같음하여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을 수료한 경우 발급 가능) · 법정윤리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만 제출
--



라. 전산 입력요령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재무지원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을 입력

전체메뉴 <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재무분야 지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1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재무 : 2개사

20

순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지원일자 (수료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 효과	공시명	전자계약시스템명
☐ 1	(주)한화건설	104-81-73406	2019-01-01	2019-11-25	재무(전자계약서 인지세 70%이상지원)	인지세 절감	회관 신속 공사	공제조합시스템
☐ 2	(주)아티포트	102-81-23458	2019-01-01	2019-11-22	재무(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백만원지원	신속공사		

전체 2 건 (1 ~ 2)

1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전체메뉴 <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재무분야 지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재무 : 2개사

협력업자 지원현황 자료편집

2 지원내용 선택

3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

4 지원성과/효과

공시명 전자계약시스템명

신속 공사 공제조합시스템

사

전체 2 건 (1 ~ 2)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추 가

- 협력업자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창 생성

② 지원내용

- 재무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 유형 중 택일
 - 1백만원이상 현금, 현물 지급
 - 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 선지급
 - 전자하도급계약 인지세 70%이상 지원
 - 계약이행보증 면제

③ 상 호

- “상호” 우측  를 클릭하여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업체 중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입력됨

④ 지원성과/효과

- 재무지원에 따라 나타난 성과를 간략히 입력 (예 : “경영애로 완화” 등)

⑤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업로드

- 재무지원한 협력업체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기능 활용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교육지원 업체를 선택하여 교육기관, 교육과정, 참석자 등을 입력

전체메뉴 <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9.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교육분야 지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교육지원 : 2개사, 0명

20 ▾

순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지원일자 (수료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교육기관명	참석자성명	주민번호(6 자리)
☐ 1	(주)빌트에이	101-81-17652	2019-01-01	2019-11-06	교육(법정윤리교육-법인수)	교육과정명수정	교육기관명수정	홍길동	890729
☐ 2	구산토건(주)	101-81-22169	2019-01-01	2019-11-27	교육(위탁교육-법인수)	위탁교육과정명	위탁교육기관명	김하나	890729

전체 2건 (1 ~ 2) ◀ 1 ▶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전체메뉴 <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9.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교육분야 지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교육지원 : 2개사, 0명

협력업자 지원현황 자료편집

② 지원내용 선택

③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지원일자(수료일자)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명 📝

참석자 성명 📝

주민번호(앞6자리) 📝

저장 닫기

순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지원일자 (수료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교육기관명	참석자성명	주민번호(6 자리)
☐ 1	(주)빌트에이	101-81-17652	2019-01-01	2019-11-06	교육(법정윤리교육-법인수)	교육과정명수정	교육기관명수정	홍길동	890729
☐ 2	구산토건(주)	101-81-22169	2019-01-01	2019-11-27	교육(위탁교육-법인수)	위탁교육과정명	위탁교육기관명	김하나	890729

전체 2건 (1 ~ 2)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① 추 가

-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창 생성

② 지원내용

- 교육유형 및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 중 택일
 - 위탁교육-법인수
 - 위탁교육-인원수
 - 법정윤리교육-법인수
 - 법정윤리교육-인원수

③ 상 호

- “상호” 우측  를 클릭하여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업체 중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입력됨

④ 엑셀업로드 및 엑셀다운로드

- 교육지원한 협력업체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기능 활용



7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가. 개 요

-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공동개발 실적 등을 평가 (배점 : 대기업 10점, 중소기업 5점)

나. 평가방법

평가항목	⑥ 점 수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체당 각 2점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체당 각 2점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통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당 각 1점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협력업체당 각 1점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협력업체당 각 1점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 협력업체가 자사로부터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확인서」 상의 기술개발지원 항목으로 1백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당년도에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를 등록한 경우로서 자사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
 - 단,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해 인정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당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단, 해당 특허와 하도급계약권이 관련 공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가능
-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자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 자사가 건설 시공 관련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협력업자에게 기술 이전을 위해 해당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협력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수행하고,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 *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⑥ 점수 산정방법

- 각 평가항목별 해당되는 협력업체가 다수인 경우, 하나의 항목 내에서 최대 배점(대기업 10점, 중소기업 5점)까지 평가점수를 중복하여 산정 가능



다. 사실확인서류

기술지원 유형	제출서류
기술개발비용 지원	㉠ 협력업체의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 ㉠, ㉡ 을 1set로 제출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해당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 협력업체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 ㉠, ㉡ 을 1set로 제출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 자사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인력파견 입증서류(해당 직원의 인사자료 등) 또는 기술전수 교육 입증서류(교육에 참석한 협력업자 임직원 서명부, 교육현장사진 등) ⇒ ㉠, ㉡ 을 1set로 제출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에서 발급한 성과 공유과제 확인서 사본

라. 전산 입력요령

9.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기술지원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을 입력

전체메뉴 <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9.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10 상생협력계 운영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분야 지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개발비지원 : 1개사 | 공동개발 : 1개사 | 신기술보유업체하도급 : 1개사 | 선진기술이전 : 1개사 | 성과공유제수행 : 1개사

20

순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지원일자 (수료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신기술명(특허명)	공시명
☐ 1	(주)건원건설	212-81-36401	2019-01-01	2019-11-27	기술(신기술보유업체하도급)	기술역량제고	신기술보유	신축아파트
☐ 2	(주)아티포트	102-81-23458	2019-01-01	2019-11-22	기술(선진기술 이전)	시공효율향상	신기술2	
☐ 3	구산토건(주)	101-81-22169	2019-01-01	2019-11-22	기술(개발비지원)	개발비지원		
☐ 4	명화엔지니어링(주)	101-81-18587	2019-01-01	2019-11-01	기술(공동개발)	기술역량제고	신기술보유	
☐ 5	유구이앤씨(주)	101-86-44794	2019-01-01	2019-11-02	기술(성과공유제 수행)	시공효율향상		

전체 5건 (1 ~ 5) ◀ ▶ 1 ▶ ▶▶

전체메뉴 <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9.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10 상생협력계 운영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분야 지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개발비지원 : 1개사 | 공동개발 : 1개사

순번 상호

☐ 1 (주)건원건설

☐ 2 (주)아티포트

☐ 3 구산토건(주)

☐ 4 명화엔지니어링(주)

☐ 5 유구이앤씨(주)

전체 5건 (1 ~ 5)

협력업자 지원현황 자료편집

2 지원내용 선택

3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4 지원성과/효과

신기술명(특허명) 공시명

기술보유 신축아파트

기술2

기술보유

저장 닫기



① 추 가

- 협력업자 기술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입력창 생성

② 지원내용

- 기술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 항목 중 택일
 - 개발비 지원
 - 공동개발
 - 신기술보유업체 하도급
 - 선진기술 이전
 - 성과공유제 수행

③ 상 호

- “상호” 우측 🔍를 클릭하여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업체 중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입력됨

④ 지원성과/효과

- 재무지원에 따라 나타난 성과를 간략히 입력 (예 : “기술역량 제고”, “시공효율 향상” 등)

⑤ 엑셀업로드 및 엑셀다운로드

- 기술지원한 협력업체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기능 활용

8 상생협의회 운영 실적 평가

가. 개 요

-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운영 실적을 평가 (배점 : 5점)

나. 평가방법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② 상생협의회 운영 현장수	20%이상 또는 20개 이상	2
	①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10%이상 또는 10개 이상	1
	상생협의회 운영 현장수 합산	10%미만이고 10개 미만	0
나. 상생협의회 운영성과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회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또는 ‘감사패’ 등 수상한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2
	③ 자체적으로 상생협의회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1

- ▶ ‘가’, ‘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인정
- 단, ‘가’는 최대 2점, ‘나’는 최대 3점까지 점수 부여 가능

①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공공공사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20.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단,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도급공사 현장은 제외

② 상생협의회 운영 현장수

- ①의 신규 공공공사 현장 중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한 현장수를 합산
-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의회 협정서’ 및 ‘월간/주간 운영일지’에 따라 공사기간 중 매월 상생협의회 운영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인정
- 공동도급 구성사인 경우 상생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협정서 상 기명 날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③ 자체적으로 상생협의체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를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류에 따라 평가 실시
 - 원도급업자가 자체평가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추진실적 평가표’를 토대로 평가하되,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상의 ‘평점’이 아닌 사실확인서류에 근거하여 별도 평가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예시

- ▷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고충 및 애로해소
- ▷ 공사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협조
- ▷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 ▷ 건설공사 수행방법 개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다. 사실확인서류

(1)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

- ㉠ 현장별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사본(붙임 참조)
 - 발주자(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원·하수급인(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모두 날인한 협정서
 - ㉡ 참석자 서명날인이 포함된 현장별 ‘월간/주간 상생협의체 운영일지’ 사본(붙임 참조) 및 관련 사진
- ⇒ ㉠, ㉡ 을 1set로 제출

(2)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 ㉠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붙임 참조)
 - 발주자의 실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서류
 -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사실확인서류
 - 발주자가 수여한 표창장, 감사패 등(현장소장 수상도 인정) 또는 운영일지 및 관련 사진 등 상생협의체 운영성과를 입증하는 서류
- ⇒ ㉠, ㉡ 을 1set로 제출



① 수 정

- 상생협업체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공사 건을 선택 후, 수정버튼을 클릭, 새로운 입력 창에 ‘협업체 운영실적’ 입력 및 해당 ‘협력업체’ 선택
- ‘상생협업체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업체 협정서’, ‘월간/주간 운영일지’ 등 내용에 따름

② 성과구분

- 운영성과 유무에 따라 다음 중 택일
- 운영성과 우수(포상) :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한 경우
- 운영성과 우수(포상 없음) : 원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상생협업체 운영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성과 없음

③ 운영내용

- 상생협업체 운영 내용을 간략히 입력 (예 : “작업환경 개선 협의”, “시공효율화 방안 논의” 등)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업로드

- 상생협업체 운영현장수가 많은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 기능 활용

9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 실적 평가

가. 개 요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받은 표창 등 실적을 평가 (배점 : 3점)

나.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점 수
①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3
② 시·도지사 표창	2

①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 당년도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하거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외 공공기관장, 단체장 표창은 불인정

② 시·도지사 표창

- 당년도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불인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표창에 한해 인정
 -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기타 지자체 공공기관장의 표창 수상은 불인정

다. 사실확인서류

- 표창장 등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라. 전산 입력요령

11.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당년도 상호협력 관련 표창 수상 내역을 추가하고 수여기관, 수여일자 등을 입력

전체 메뉴 < 10 상생협력제 운영현황 11.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12 재재처분 받은현황 >

상호협력 관련 표창 또는 모범업체 지정 실적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1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중앙행정기관의장 : 0건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 0건 | 하도급거래모범업체선정 : 0건 |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 0건 전체 : 0건

20 구분: ☐ 전체선택

순번	구분	수여기관	수여일자	수여내용
☐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Showing 0 to 0 of 0 entries

이전 ◀ ▶ 다음

CAK 대한건설협력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전체 메뉴 < 10 상생협력제 운영현황 11.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12 재재처분 받은현황 >

상호협력 관련 표창 또는 모범업체 지정 실적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중앙행정기관의장 : 0건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 0건 | 하도급거래모범업체선정 : 0건 |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 0건 전체 : 0건

구분: ☐ 전체선택

순번	구분	수여기관명	수여일자	수여내용
☐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Showing 0 to 0 of 0 entries

표창 받은원활 자료원집

2 구분: ☐ 전체

수여기관명:

수여일자:

3 수여내용: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력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추 가

- 표창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② 구 분

- 수여기관 종류를 선택하고, “수여기관명”에 구체적 기관명을 기재

③ 수여내용

- 표창장 상의 상호협력 관련 문구(“원·하도급업체간 상생 및 협력증진”, “공정한 하도급 문화 형성 기여” 등)를 간략히 기재



10 제재처분 감점

가. 개 요

-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등 관련하여 건산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기본점수(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 20점)에서 감점

나. 평가방법

① 제재처분 원인행위	평가기준	② 점수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관련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2
- 건산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38조 관련	과태료 1회	-2
- 하도급법 관련	벌금 또는 고발 1회	-3
- 공정거래법 제23조~제23의3 관련	과징금 1회	-5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관련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관련		

① 제재처분 원인행위

- 당년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 받은 범위반행위로 한정
-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

② 점 수

- 처분유형별 감점을 모두 누계하여 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은 20점에서 차감한 후 잔여점수 부여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를 받은 경우 제재처분 원인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공사 하도급 관련은 처분 1회당 1점 감점
 -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공정거래법 제23조~제23조의3)은 처분 1회당 2점 감점
- 건산법 상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하도급계약 후 30일 이후 통보) 또는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 1점만 감점

다. 사실확인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KISCON 등을 통해 확인)



라. 전산 입력요령

12. 제재처분 받은 현황

당년도 제재처분 사항을 추가하여 처분기관, 처분일자 등을 입력

전제메뉴 < 11.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12. 제재처분 받은현황 13. 사망사고 현장현황 >

공사대금 적정 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등 관련 제재처분 현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1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시정권고.영형.지시 : 0건 | 과태료 : 1건 | 고발.벌금 : 0건 | 과징금 : 1건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건 전체 : 3건

20 구분: ☐ 전체선택

순번	구분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 1	과징금	서울시청	2019-07-03	일괄하도급
☐ 2	과태료(하도급계약 지연통보, 변경미통보)	광주시청	2019-04-03	하도급계약 변경 미통보
☐ 3	영업정지	경남도청	2019-11-13	부실시공

전체 3 건 (1 ~ 3) ◀ 1 ▶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전제메뉴 < 11.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12. 제재처분 받은현황 13. 사망사고 현장현황 >

공사대금 적정 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등 관련 제재처분 현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시정권고.영형.지시 : 0건 | 과태료 : 1건 | 고발.벌금 : 0건 | 과징금 : 1건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건 전체 : 3건

구분: ☐ 전체선택

순번	구분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 1	과징금			일괄하도급
☐ 2	과태료(하도급계약 지연통보, 변경미통보)			하도급계약 변경 미통보
☐ 3	영업정지			부실시공

전체 3 건 (1 ~ 3)

제재처분 받은현황 자료편집

2 구분: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3 처분사유: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① 추 가

- 제재처분건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처분을 수차례 받은 경우에도 제재처분 건별로 각각 모두 입력

② 구 분

- 제재처분 종류 및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중 택일
 - 시정명령, 지시(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위반)
 - 시정명령, 지시(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 시정권고(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위반)
 - 시정권고(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 과태료
 - 과태료(하도급계약 지연통보, 변경미통보)
 - 고발, 벌금
 - 과징금
 - 입찰참가제한
 - 영업정지

③ 처분사유

- 제재처분 원인사유를 간략히 기재(예 : 하도급대금 미지급,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등)



11 사망사고 현장 평가

가. 개 요

-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에 따라 평가점수 감점 (최대 10점)

나.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② 점수
①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2인 미만	-5
	2인 이상	-10

①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전년도 사망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단, 2019년은 7월 15일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한하여 평가
- 신청사에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산재 책임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사망자수는 산정시 제외
 - 추후 산업재해 확정되는 경우 차년도 평가에 반영
- 공동도급 현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지분율을 고려하여 사망자수를 안분 계산

② 점수 산정방법

- 제재처분에 따라 감점된 점수와 합산하여 대기업은 최대 10점, 중소기업은 최대 20점 내에서 감점

다. 사실확인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라. 전산 입력요령

13. 사망사고 현장 평가

2019년 산업재해가 확정된 사망사고 현장을 추가하여 사고내역을 입력

전체메뉴 < 12 재해처분 받은현황 13. 사망사고 현장현황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

건설현장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총 사망자수 : 3.5명

☐ 전체선택

순번	공사명	발주자명	사망사고 발생일자	사망자수	비고
☐ 1	건설타워 신축공사	도래미(주)	2019-07-16	2	
☐ 2	삼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김문정	2019-11-02	0.5	
☐ 3	발당공사	도래미(주)	2019-12-01	1	

전체 3건 (1 ~ 3)

전체메뉴 < 12 재해처분 받은현황 13. 사망사고 현장현황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

건설현장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총 사망자수 : 3.5명

☐ 전체선택

순번	공사명	발주자명	사망사고발생일자	사망자수	비고
☐ 1	건설타워 신축공사				
☐ 2	삼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3	발당공사				

전체 3건 (1 ~ 3)

사망사고 발생 현황

2 공사명

발주자명

사망사고발생일자

3 사망자수

비고

저장 닫기



① 추 가

- 당년도 사망사고 발생 현장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② 공사명

- 사망사고 발생 현장의 공사명을 입력

③ 사망자수

- 해당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입력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인 경우 지분율을 고려하여 사망자수를 안분 계산하여 입력

1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가. 개요

- 건설공사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실적을 반영하여 가점 부여 (최대 3점)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가능

나. 평가방법

산정방법	⑤ 평가기준			
	대기업	가점	중소기업	가점
$\frac{\text{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text{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times \text{④ 시스템 활용 개월수 평균}$	70%이상	+3.0	60%이상	+3.0
	60%~70%미만	+2.5	50%~60%미만	+2.5
	50%~60%미만	+2.0	40%~50%미만	+2.0
	40%~50%미만	+1.5	30%~40%미만	+1.5
	30%~40%미만	+1.0	20%~30%미만	+1.0
	20%~30%미만	+0.5	10%~20%미만	+0.5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모든 ‘민간공사’ 중 당년도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현장수를 누계
- 단,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장,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장은 제외

☞ 민간공사의 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인 발주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

- ①의 민간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현장수 합산
- 현장 내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모든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부 하도급공사 현장에 대해 동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 소명 필요
- 임금의 경우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연 또는 일괄지급의 경우 불인정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③ 시스템 활용 개월수 평균

- ②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별 ‘공사개월 수’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공사개월수’는 당년도 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한 자료의 계약연월, 준공(예정)연월을 기준으로 계산
 - 단, 계약연월이 당년도 이전인 경우 시스템 활용 시작일을 1.1.로 설정하고, 준공예정연월이 당년도 이후인 경우 시스템 활용 종료일을 12.31.까지로 설정

④ 시스템 활용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 ③의 공사개월수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대상월(기성월) 수를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수의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이 최초로 지급된 현장과 마지막으로 지급된 현장을 시작월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개월수 산정

⑤ 평가기준 적용방법

- 평가산식에 따른 실적비율(백분율)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실적비율 산정시 소수 첫째자리(미만절사)까지 산출

【예시】 2019년 기성실적이 발생한 민간공사 현장이 3개인 신청사에 대한 평가

공사명	공사기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지급			
	계약년월 ~ 준공예정년월	개월수	활용 여부	임금지급 대상월	(임금지급 대상월별) 최초지급일	개월수
A 현장	18.02~20.02	12개월	활용	1~12월분	(1월분) 18.02.10 (12월분) 19.01.25	12개월
B 현장	19.06~20.04	7개월	활용	7~11월분	(7월분) 19.07.25 (11월분) 19.12.05	5개월
C 현장	19.10~20.08	3개월	미활용	-	-	-

-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3건 (A, B, C 현장)
- ② 시스템 활용 현장수 : 2건 (A, B현장)
- ③ 공사기간 개월수 (임금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 : $\frac{12+7}{2} = 9.5$ 개월
- ④ 임금지급 개월수 (임금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 : $\frac{12+5}{2} = 8.5$ 개월

$$\text{❖ 평가산식} : \frac{\text{②}}{\text{①}} \times \frac{\text{④}}{\text{③}} = \frac{2}{3} \times \frac{8.5}{9.5} = 0.596491... \Rightarrow \underline{\underline{59.6\%}}$$

다. 사실확인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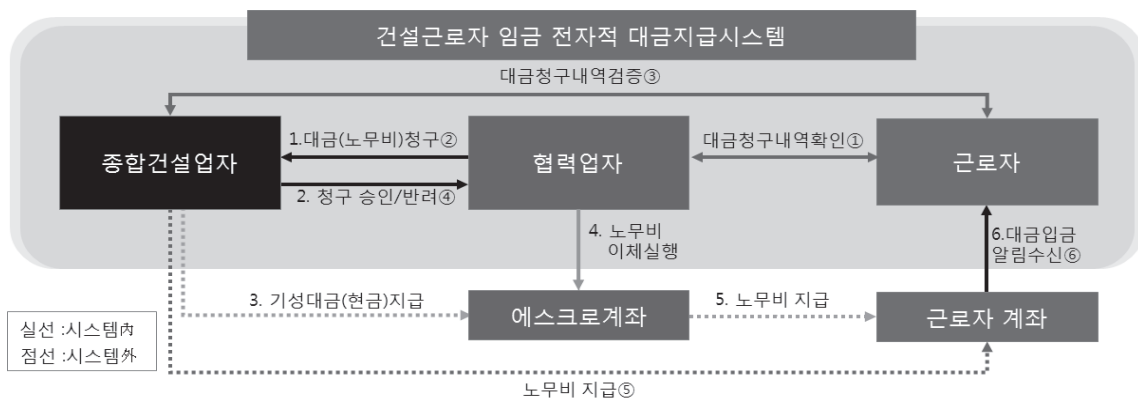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화면캡처 출력물
(종합건설업체명, 현장명, 임금지급 대상월, 월별지급일자 등 포함)
※ 신청사가 동의한 경우 시스템 운영사를 통해 협회가 직접 확인 가능
 - ㉡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 확인서 또는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장근로자수 확인용)
- ⇒ 현장별로 ㉠, ㉡을 1set로 제출



참 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요

- ▷ 원수급인이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협력업자의 계좌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협력업자의 인출 제한기능을 갖출 것 (에스크로계좌 등 활용)
- 다만, 협력업자 동의하에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 에스크로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인정
- ▷ 원수급인가 지급할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협력업자의 대금 청구 및 승인기능이 있어야 하며, 원수급인 및 협력업자가 청구·승인 및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것
- ▷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을 갖출 것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흐름도>



*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에스크로계좌를 통해 노무비 지급 : 1~6

*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금청구에 따라 직접 근로자 계좌로 지급 : ①~⑥

※ 필요시 평가기관(협회)에서 해당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하여 검증 실시

라. 전산 입력요령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을 기준으로 당년도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민간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을 추가하여 시스템명, 활용기간 등을 입력

전체메뉴 < 13 사망사고 현장현황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

민간공사에서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여부 및 활용기간을 입력합니다.
(계약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1개월 초과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만 입력)

역설업로드 역설다운로드

조회 ①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1건 | 임금지급한 현장수: 0건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개월수 평균값: 0.0개월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지급개월수 평균값: 0.0개월

20 ▾ 공사명: ☐ 전체선택

순번	원도급공사(신청사 기준)							대금지급시스템 활용기간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기성액	총계약액	발주처	공사개월수	활용시스템명	청구승인 지급가능	실시간 지급확인가능	인출제한가능	시작월	종료월	활용개월수
Showing 0 to 0 of 0 entries															

전체메뉴 < 13 사망사고 현장현황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

민간공사에서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여부 및 활용기간을 입력합니다.
(계약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1개월 초과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만 입력)

역설업로드 역설다운로드

4 추가 수정 삭제 출력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현황

원도급공사		시스템 활용내역	
신고번호		활용 시스템명	
② 공사명		청구승인지급가능	Y ☐
계약년월		실시간 지급확인가능	Y ☐
준공년월		인출 제한가능	선택 ☐
당년도공사기간	개월	시작월	
당년도기성액	백만원	종료월	
총계약액	백만원	③ 활용기간	개월
발주자명			

※ 신고번호는 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저장 닫기



① 추 가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민간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② 공사명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의 공사명을 입력
 - 우측  을 클릭하면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공사기간’, ‘당년도기성액’, ‘총계약액’, ‘발주자명’ 자동 입력 가능

③ 활용기간

- 시스템 활용 시작월, 종료월을 입력하면 활용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됨

④ 엑셀업로드 및 엑셀다운로드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이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기능 활용

13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가

가. 개 요

- 협력업자의 해외건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에 동반진출한 실적을 평가하여 가점 부여 (최대 3점)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가능

나.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점
	대 기 업	중소기업	
① 해외건설공사로서 ②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5건 이상	3건 이상	3
	3~4건	2건	2
	1~2건	1건	1

① 해외건설공사

- 2019년도 대한건설협회 및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당년도에 해외에서 기성실적이 발생한 공사

②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 자사가 해외공사 진출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형태로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 하나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수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건은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다. 사실확인서류

- 별도 추가 제출 필요서류 없음(해외건설협회에 신고·확인된 실적으로 평가)



라. 전산 입력요령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협력업자가 함께 공사에 참여한 공사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

전체메뉴 <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16 일제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

협력업자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동반진출협력건수 : 0건

20 ▾ 공사명: ☐ 전체선택

순번	원도급공사(신청사 기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가성액	발주자	공사지역	구분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가성액
Showing 0 to 0 of 0 entries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전체메뉴 <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16 일제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

협력업자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수정 삭제 출력

동반진출협력건수 : 0건

공사명:

순번 ☐ 신고번호

Showing 0 to 0 of 0 entries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자료 편집

원도급공사				동반진출업체 공사현황			
1	신고번호			2	업종		
3	공사명			4	상호		
5	계약년월			6	사업자등록번호		
7	준공년월			8	구분		
9	당년도가성액			9	계약일자		
10	발주자명			10	준공일자		
11	국가명			11	총계약액 (동반진출업체)		
※ 신고번호는 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12	당년도가성액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① 추 가

-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해외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② 공사명

-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명을 입력
 - 우측  을 클릭하면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공사기간’, ‘당년도기성액’, ‘총계약액’, ‘발주자명’ 자동 입력 가능

③ 상 호

- 우측  를 클릭하여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 중 동반진출한 협력업체를 선택

④ 구 분

- 동반진출업체의 참여 유형에 따라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선택



14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가. 개 요

-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에 대해서 가점 부여 (최대 5점)
- 단, 총 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가능
- ※ 2021년 평가시부터 배점(5점)으로 전환하여 평가

나. 평가방법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수 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80%이상	5
	65%이상~80%미만	4
	50%이상~65%미만	3
	35%이상~50%미만	2
	20%이상~35%미만	1
	20%미만	0

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수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민간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20.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단, 2019년은 7월 15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분에 한하여 인정

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수

- ①의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시공과정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현장수를 합산

☞ 일체형 작업발판 (시스템 비계)

-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당년도 계약 후 차년도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사용된 경우에도 평가시까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현장으로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에게 동일하게 사용 현장 수로 적용

다. 사실확인서류

-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에 대한 감리자(또는 발주자) 확인서 (붙임 참조)
 - ㉡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 ⇒ 현장별로 ㉠, ㉡, 을 1set로 제출



라. 전산 입력요령

16.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신규 민간건축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을 추가하여 지원효과 등을 입력

전체메뉴 <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건설 현황 16.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17 신청서류 >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전체 : 1건

20 ▾ ☐ 전체선택

순번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발주자명	공종	지원성과/효과
☐ 1	2019-0011	민간공사테스트	2019-11	2020-11	도레미송	건축	민간공사 테스트

전체 1건 (1 ~ 1)

◀ ◻ 1 ▶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전체메뉴 <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건설 현황 16.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17 신청서류 >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을 입력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전체 : 1건

☐ 전체선택

순번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종	발주자명	지원성과/효과
☐ 1	2019-0011	민간공사테스트					민간공사 테스트

전체 1건 (1 ~ 1)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1 신고번호

2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종

발주자명

3 지원성과/효과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① 추 가

- 신규 민간건축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입력창 생성

② 공사명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의 공사명을 입력
 - 우측  을 클릭하면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종’, ‘발주자명’ 자동 입력 가능

③ 지원성과/효과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에 따라 나타난 성과를 간략히 입력 (예 : “현장 근로자 안전 제고” 등)



15 신청내용 확인 · 제출 및 서류 출력

가. 신청내용 확인

17. 신청서표지

16. 일제할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17. 신청서표지
18. 내용 확정(자료전송)

조회 저장 출력

1 총기성액 4,118 (당년도 국내기성액: 3,568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 550) × 201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입력

* 인정 총기성액은 2019년도 공사실적 확정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분야	상세내용	신청점수
1. 공동도급실적 (10점)	·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5점) · 나.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5 5
2. 하도급실적 (20점)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5
3. 협력업자육성 (57점)	· 가. 협력업자 재투자율 (1) 하도급 대금 및 지급 시가동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5점) ③ 현금성 결제비율 (9점) ④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⑤ 전자하도급계약 (4점) (2) 협력업자 재투 및 교육지도 (10점) ① 협력업자의 재투자율 법인수 (5점) ② 협력업자의 교육지원 법인수 또는 인원수 (5점) ·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10점) · 다. 상생협력체 운영(5점)	8 8 0 0 0 0 0 0 0 5 4 0
4. 신인도 (19점)	·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등을 받은 실적(3점) ·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받은 실적 (10점) (1) 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0회 (2) 과태료 0회 (3) 고발·발급 0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회 · 다. 사고로인한 사망자수(-10점)	0 0 0 0 0
5. 가점 (11점)	· 가. 민간공사 전자적 대금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 대금지급(3점) ·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등 동반건설실적(3점) · 다. 민간공사현장 일제할 작업발판 사용실적(5점)	0.0 0.0 0.0
6. 신청점수 합계	각항목별 신청점수의 합	32.0

2 총인원인원 범위수계 : 190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① 총기성액(국내분)

- ‘당년도 국내기성액’과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을 합산하여 자동 입력됨

가. 당년도 국내기성액

-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는 ‘19년도 국내기성액(누락신고분 제외)’이 자동 입력됨(수정입력 가능)
- “201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총괄표 상의 합계(1+2)”중 “국내기성액 합계(누락분제외)” 금액으로 평가됨

나.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

-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실적의 합이 자동 입력됨

- 총기성액이 미입력된 경우 하도급실적 비율이 산정되지 않음 (0점 처리)
- 업체에서 입력한 총기성액과 협회에서 '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평가 후 확정
정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협회에서 **확정한 총기성액**으로 평가함
- ※ 6월 중 중간평가결과 통보시 **확정된 총기성액** 반드시 확인 요망

② 신청접수

- 신청업체가 입력한 실적 등이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동계산되어 입력됨

나. 신청내용 확정 및 자료전송

18. 내용 확정(자료전송)

전체메뉴

17. 신청서표지

18. 내용 확정(자료전송)

19. 서류출력

2019년도 상호협력 평가 내용 확인 및 확정

1. 업체 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작성완료
2. 2019년도 협력업체 관리대장	190 건
3. 신청 점수	32.0 점

이전으로

1

신청내용확정

(작성내용을 다시 확인 하겠음)

(내용확정 시 자료전송 됨)

■ "신청내용확정" 클릭 시 재입력이나 수정은 되지 않으니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 후 신청내용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내용확정후" 수정 또는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도회	전북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 5층)
TEL	(063)288-3881 ~ 2
FAX	(063)285-5290

① 신청내용 확정

- 신청내용 확정(버튼 클릭)시 자동으로 전송됨
- 상호협력평가 신청기한(∼'20.3.16.) 이내에 신청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사는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는 본회 정보관리실로 문의
- ※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기존 자료확정 내용 수정 불가



다. 서류출력

19. 서류출력

전체 메뉴 <
18 내용 환경(자료전송)
19. 서류출력

1 전체 출력

☐ 1. 신청서표지(대기업)

☐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 6. 하도급매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 9.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 10. 상생협력체 운영현황

☐ 11.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현황

☐ 12. 제재처분 받은현황

☐ 13. 사망사고 현장현황

☐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 16. 협력업체(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 17.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 서류출력 후 신고기간내에 접수해야 신청완료 됩니다.

제출 시도회	전북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 5층)
TEL	(063)288-3881 ~ 2
FAX	(063)285-5290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① 전체출력 (버튼)

■ 출력 후 입력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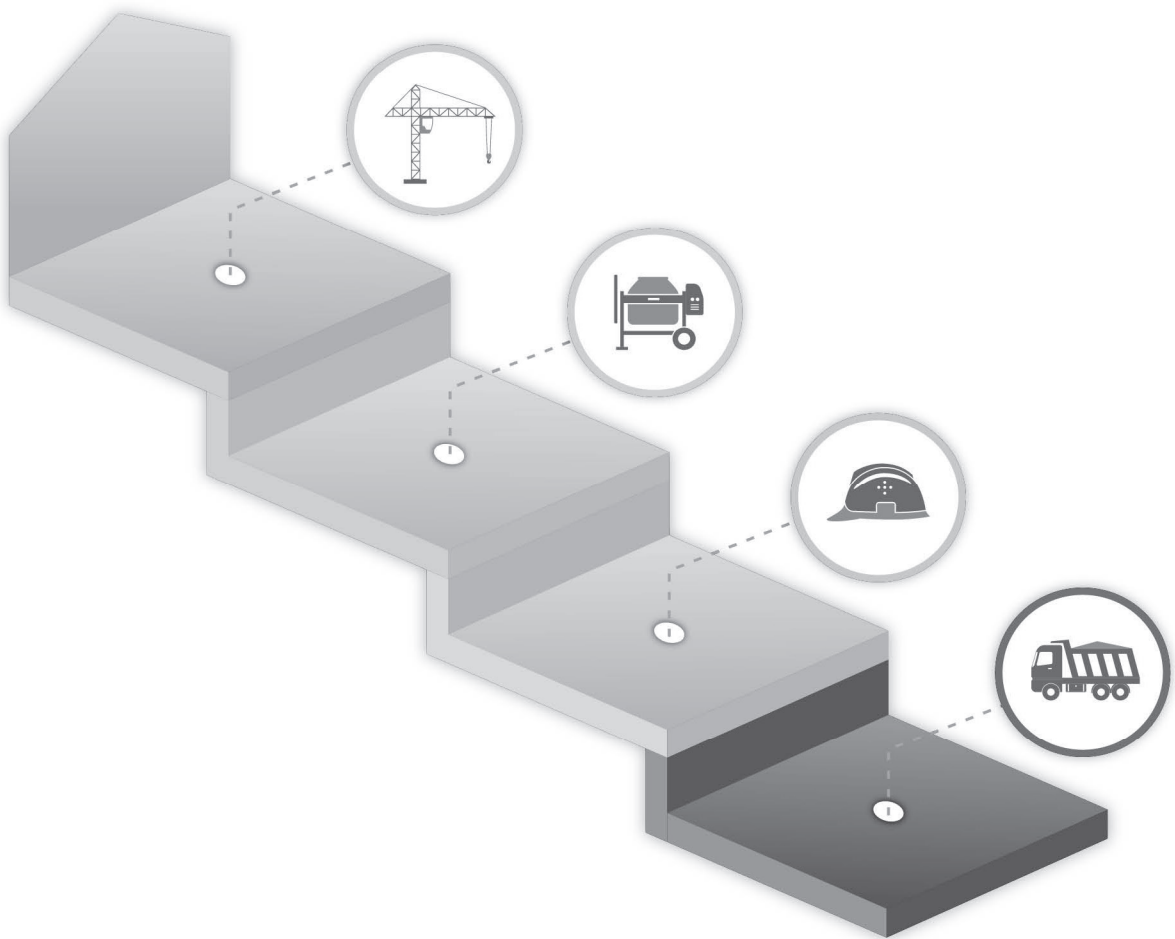
– 협회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온라인 전송자료가 다를 경우, **협회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온라인 자료전송만 실시하고 신청마감일('20.3.16.)까지 상호협력평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 업체로 처리

■ 출력 순서대로(“해당없음” 항목 포함) 서류를 합철하고, 신청서 표지 상의 대표자 확인란에 반드시 “대표자 도장 날인(사용인감도 가능)” 후 제출

■ 자료 전송 1시간 이후 건설업체 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 “마이페이지”에서 전송결과 확인 가능

IV. 전산 프로그램 기능 안내





1 전년도 자료 내려받기

전체 메뉴 <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2.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

상호협력평가의 대상이 되는 당년도 협력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란색 음영 업체는 신청서류 제출시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등록일변경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법인별협력업자수 : 0 총협력업자수 : 0

업종: ▼ 상호: ▼

☐ 순번 업종명 상호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Showing 0 to 0 of 0 entries

자료내려받기 취소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 ‘2.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조회시 입력된 자료가 없는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자료내려받기” 가능
 - 내려받은 자료는 반드시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를 새로 입력한 후 저장

2 엑셀파일 전환기능

전체 메뉴 <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

협력업자에 대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을 입력합니다
(노란색 음영 목록은 하도급 기성력이 0인 공사)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조회 추가 하도급추가 수정 삭제 출력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6건 | 당년도하도급기성실적건수(신규하도급계약) : 5건 전체 하도급건수 : 8건 | 당년도기성실적 합계 : 1,183백만원

20 업종: ▼ 공사명: ▼ ☐ 전체선택

순번 ☐	별도급공사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하도급공사(백만원)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공공공사	총계약액				기성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기성액 (차사분)
☐ 1	2018-0003	아파트신축공사	2017-01	2019-09	N	1,000	0	건축	(유)동영종합건설	407-81-08712	2017-11-01	2019-08-06	33	0
☐ 2	2018-0008	관리관리	2017-08	2020-12	N	1,500	0	금속창고 (주)빌트에이	101-81-17652	2019-11-11	2019-11-29	200	0	
☐ 3	2018-0010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 ...	2018-02	2019-09	Y	1,365	0							
☐ 4	2018-0020	기술인회관	2018-11	2019-11	N	2,000	1,000	건축	(유)동영종합건설	407-81-08712	2019-05-06	2019-09-17	500	500
☐ 5	2018-9002	테스트공사간행중	2010-01	2019-01	Y	400	10	건축	(유)동영종합건설	407-81-08712	2019-01-03	2019-01-22	300	50
☐ 6	2019-0001	테스트1	2018-02	2019-11	N	10	500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12-81-36401	2019-11-06	2019-11-20	40	0	
☐ 7	2019-0005	삼산동 근린생활시설 신 ...	2019-01	2020-01	Y	10,000	600	기계설비 아이더블유아이(주)	113-81-43565	2019-11-06	2019-11-30	100	100	
☐ 8	2019-0010	테스트테스트테스트	2019-11	2020-11	Y	555	555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12-81-36401	2019-11-01	2019-11-25	3,333	56	

전체 8 건 (1 ~ 8)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1) 엑셀다운로드

- 개별 실적들을 건별로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엑셀파일’로 저장된 자료를 불러와서 일괄 입력 가능
 -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반드시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상단 제목줄은 수정 또는 삭제 금지

☞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입력오류 사례

- ▷ 협력업자 등록일자를 2019년도 이전으로 입력하는 경우 또는 숫자 외 다른 문자, 특수기호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오류 예시 : 20180101, 2019-03-01)
- ▷ 전년도에 해당업체를 협력업자로 협회 제출하지 않았으나, 전년도 협력업자로 표기(Y)하여 입력하는 경우 등

(2) 엑셀업로드

- 입력된 엑셀파일을 프로그램으로 업로드 하는 기능
 - 엑셀파일에 입력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 오류가 있으면 업로드되지 않으므로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여 오류 수정

※ 엑셀파일 예시

업종 코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주소	←제목줄
02	(주)대한건설	1208102922	홍길동	서울01-05	02-1234-1234	2013012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03	(주)대한건설	1208102922	홍길동	강남-26-05	02-1234-1234	2013012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03	(주)한국건설	1208102921	이몽룡	서울03-02	02-3456-7896	201303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 업종은 “코드”로 변환하여 입력해야 함
(불러온 자료 sheet1에서 코드 확인가능)



3 항목별 정렬 및 검색기능

전체메뉴 <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2.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체 관리대장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

상호협력평가의 대상이 되는 당년도 협력업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란색 음영 업체는 신청서류 제출시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

엑셀업로드 엑셀다운로드 등록일변경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법인별협력업체수 : 189 총협력업체수 : 189

20 업종: 상호: 전제선택

순번	업종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등록번호	협력업체등록일	전년협력업체
☐ 1	가스시공	(유)간송개발	317-88-00075	유정진	전북전주20152301	2019-01-01	Y
☐ 2	가스시공	(유)가림엔지니어링	402-81-69408	문상호	전북전주26-27-1-1	2019-01-01	Y
☐ 3	강구조물	(주)벤티코리아	107-86-22798	이황석	충남천안09-18-03	2019-01-01	Y
☐ 4	강구조물	케이솔(주)	140-81-22145	정영숙	22145	2019-01-01	Y
☐ 5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12-81-36401	이방우	송파-02-21-03	2019-01-01	Y
☐ 6	강구조물	(주)세원이엔지	617-81-42321	김세원	부산해운2002-21-01	2019-01-01	Y
☐ 7	강구조물	세진기업	620-81-10015	권재균	경남96-21-5	2019-01-01	Y
☐ 8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407-81-08712	나승호	140516	2019-01-01	Y
☐ 9	건축	(유)관포건설	519-86-01147	유영일	140610	2019-01-01	Y
☐ 10	금속창호	(주)발트메이	101-81-17652	이영록	83-11-265	2019-01-01	Y
☐ 11	금속창호	주식회사아이블라인드	114-86-16241	김수원외1	서초-03-08-02	2019-01-01	Y
☐ 12	금속창호	한빛유리(주)	128-81-43214	이형재	경기북부98-08-6	2019-01-01	Y
☐ 13	금속창호	(주)테크원창	128-81-77107	남기섭	고양2003-08-0001	2019-01-01	Y
☐ 14	금속창호	효원산업(주)	133-81-32489	김원석	경기97-08-5	2019-01-01	Y
☐ 15	금속창호	화성철역(주)	133-81-33571	신상순	경기08-28	2019-01-01	Y
☐ 16	금속창호	한우물중공업(주)	301-86-13514	엄순섭	군포08-07-0003	2019-01-01	Y
☐ 17	금속창호	(주)가온건설	317-81-25397	김기남	00-000-000	2019-01-01	Y
☐ 18	금속창호	진형건설(주)	416-81-52570	구자화	광양2006-08-03	2019-01-01	Y
☐ 19	기계설비	아이더블유아이(주)	113-81-43565	김만규 외	구로97-12-11	2019-01-01	Y
☐ 20	기계설비	한양이엔지(주)	124-81-37874	김형욱	82-12-15	2019-01-01	Y

전체 189 건 (1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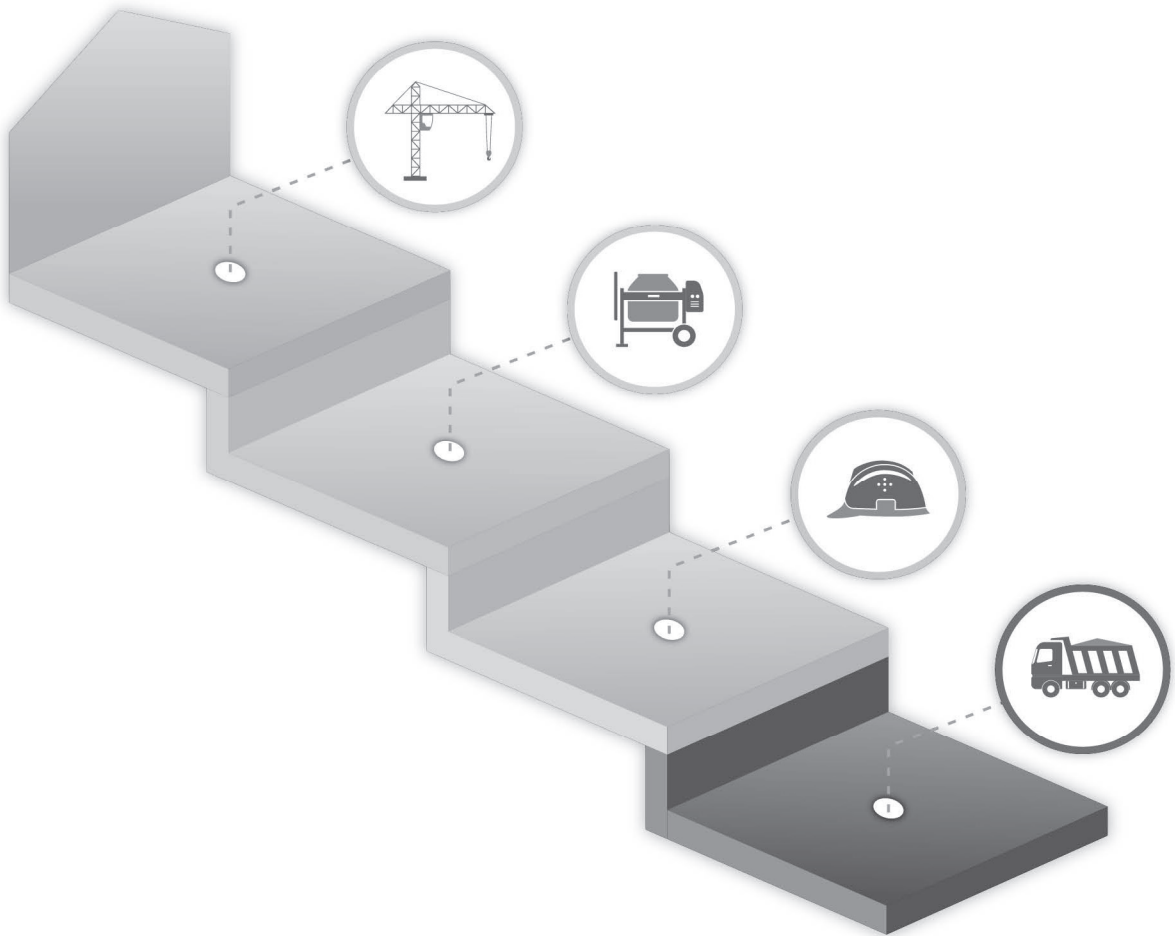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산형

- ‘업종’, ‘상호’ 등 상단 제목줄의 해당 항목명을 클릭하여 정렬 가능
 - 각 항목명에 ▲, ▼이 나타나며 해당 항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 업종, 상호, 공사명 등으로 해당 목록 검색 가능
- 입력된 목록에서 마우스 두 번 클릭 하여 해당 목록에 대한 자료편집 가능

❖ 신청 프로그램 사용 관련 문의 : (02) 3485 - 8242~7

V. 참고자료



〈참고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 [별표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 ❖ [별표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 ❖ [별지1호서식] ~ [별지13호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

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 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 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① 종합건설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 <삭 제>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 제>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① 종합건설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4.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③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④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우대사항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
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
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별지 14호 서식)
13. 사망사고 발생 현황(별지 15호 서식)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공동도급 실적”에서 나목의 개정 규정과 별표1 제3호 및 별표2 제2호의 “협력업자 육성” 중 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 제3호 및 별표2 제2호의 “협력업자 육성” 중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가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 점
1. 공동도급실적 (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당년도 공동도급 총기성액 대비 지역업체의 당년도 공사 실적 합산액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5%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0 20 15 10 5
3. 협력업자 육성 (5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삭 제>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37 27 10 5 8 4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10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 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운영 현장수 비율	2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
	(2) 협업체 운영실적	3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5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5
	(2) 65%이상~80%미만	4
	(3) 50%이상~65%미만	3
	(4) 35%이상~50%미만	2
	(5) 20%이상~35%미만	1
4. 신인도(1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3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0 (없는 경우)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2) 과태료 1회	-2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
	(4) 과징금 1회	-5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2) 고발 1회	-3
	(3) 과징금 1회	-5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 1명 이하	-5
	(2) 2명 이상	-10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 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text{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 / \text{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times (\text{임금·대금지원 개월수} / \text{공사기간 개월수}) \times 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 +2.5 +2.0 +1.5 +1.0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5건 이상 (2) 3건~4건 (3) 1건~2건	+3 +2 +1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 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0%이상 ~ 20%미만	25 25 20 15 10
2. 협력업자 육성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 낙찰률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삭 제>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37 27 10 5 8 4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2) 65%이상~80%미만 (3) 50%이상~65%미만 (4) 35%이상~50%미만 (5) 20%이상~35%미만	5 5 4 3 2 1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 점
3. 신인도(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3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20 (없는 경우)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2) 과태료 1회	-2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
	(4) 과징금 1회	-5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2) 고발 1회	-3
	(3) 과징금 1회	-5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 1명 이하	-5
4. 가점	(2) 2명 이상	-10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3.0
	(2) 60% ~ 50%	+2.5
	(3) 50% ~ 40%	+2.0
	(4) 40% ~ 30%	+1.5
	(5) 30% ~ 20%	+1.0
	(6) 20% ~ 10%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3건 이상	+3
	(2) 2건	+2
	(3) 1건	+1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의회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회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의회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회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업자 및 그 협력업자의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신인도 평가분야' 중 나~라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있거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감점하며, 나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7. 평가항목별 점수(가감점)는 각각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등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인)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⑩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외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1)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신청점수
		(2)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나. 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1)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신청점수
		(2)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해년도 공동도급 총 기성액(E)		
		(3)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외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1)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신청점수
		(2)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3. 협력업자 육성(5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②하도급 낙찰률(5점) ③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④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1)기술개발비용 지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신청점수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1)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신청점수
		(2)협의체 운영실적(3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라. 협력업자 안전지원 (5점)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4. 신인도 (1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 회		
		(3)사·도지사 표창(2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10점)		(1)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2)파태료 : 회		신청점수
		(3)고발벌금 : 회 (4)파징금 : 회		
		(5)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1)시정명령 : 회 (2)고발 : 회 (3)파징금 : 회		신청점수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4)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명		신청점수
5.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1)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신청점수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1)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6. 신청점수 합계		점		
7.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11.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13. 사망 사고현황 현황 및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1)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2)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②하도급 낙찰률(5점) ③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④전자하도급계약 (4점)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신청점수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1)기술개발비용 지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1)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2)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협력업자 안전지원 (5점)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3. 신인도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 회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20점)		(1)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2)과태료 : 회 (3)고발 : 회 (4)과징금 : 회 (5)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신청점수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갑점 10점)		(1)시정명령 : 회 (2)고발 : 회 (3)과징금 : 회 (4)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신청점수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갑점 10점)		명	신청점수
4.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1)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1)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신청점수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12.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3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협력업자 등록일자	건설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1								
2								
3								
4								
5								
6								
7								
8								
9								
10								
총 협력업자수					개사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협력업자로 불인정.
 2. ‘전년도협력업자여부’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O” 표시할것.

[별지 4호 서식]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신고번호 / 공사기간	공 사 명 / 발주자명 / 공사지역	신청사의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인 업체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상 호 / 영입소재지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총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 :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							
당년도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 지역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2.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만 작성·제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작성·제출할 것)
 3. 공사지역 및 협력업체의 영입소재지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기재할 것



[별지 5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하도급기성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주)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별지 6호 서식]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신고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공동도급 지분율 (%)	계약일자 / 준공일자	하도급 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총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		총 하도급기성액 합계 :		백만원		/		총 하도급기성실적 건수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2.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이나 당년도 기성실적 발생건은 모두 입력할 것



[별지 7호 서식]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하도급공사							재무지원현황 (해당사항에 "O"표)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명	계약일자	도급금액중 하도급금액 (백만원)	하도급 계약금액 (백만원)	하도급률 (%)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하도급대 금지급액 적정	현금성 결제우대	하도급 대금 조기자급	전자 하도급 계약
1											
2											
3											
4											
5											
6											
7											
8											
9											
10											
총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 건수 :				/ 총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자급 건수 :							
				/ 총 신규 전자 하도급계약건수 :							
하도급계약금액 총액 :				/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총액 :				(하도급률 가중평균:)			

[별지 8호 서식]

협력업자 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지원분야명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1					
2					
3					
4					
5					
6					
7					
8					
9					
10					
소 계		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개사		



[별지 9호 서식]

상생협의회 운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계약년월	공 사 명	총계 약액	참여구성원(협력업자 등) 현황			운 영 실 적		
	준공년월	발주자명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일 시 (협약체결일 회의일 등)	내 용	성과 / 효과
1									
2									
3									
4									
5									
6									
7									
8									
9									
10									

총 상생협의회 운영현장 수 :

/ 운영실적 있는 현장수 :

〈참고 2〉

평가 관련 기타 서식



〈붙임 1〉

하도급률 확인서 (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중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낙찰제 ☐ 종합평가낙찰제 ☐ 수의 등 기타				
발주자	☐ 공공기관 ☐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중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여부	☐ 적 정 ☐ 부 적 정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인)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붙임 2〉

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예시)			
1. 지급업체 (원도급업체)			
회사명		대표자	
2. 수령내용			
수령일자	세부내용	수령금액	
합		계	
우리 회사는 상기 금액을 20 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하수급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공인회계(세무)사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1부			



〈붙임 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예시)									
1. 신청사 개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사명 (신고번호)						공종		
	공사 기간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 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 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 액		
공사진척 및 대금 지급내용	구 분	회 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붙임 4〉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 발 주 자 : ○○○ 개발팀장 ○○○ (인)
 ○ 원수급자 : ○○○○ 현장대리인 ○○○ (인)
 ○ 하수급자 : ○○○○ 현장소장 ○○○ (인)
 ○○○○ 현장소장 ○○○ (인)
 ○○○○ 현장소장 ○○○ (인)
 ○○○○ 현장소장 ○○○ (인)



〈붙임 5〉

상생협의회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 (예시)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요일)			☐ 월간회의 ☐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제자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 발급	☐ 발급 ☐ 미발급 ☐ 면제 ☐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대금 조정	☐ 조정 ☐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 지급 ☐ 미지급		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 적정 ☐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붙임 7〉

해외공사 동반진출 실적 확인서						
평가신청 업 체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공 사 명						
현장소재지						
공 종		발 주 처			국 가 명	
신 고 번 호	-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공사 내역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 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명					공 종	
발 주 자 (원수급인)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천원
위의 해외 건설공사 동반진출 수급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첨부 :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원·하도급 기성실적증명서 각 1부						

〈참고 3〉

2021년 평가기준 변경(안)



2021년 평가기준 변경(안)

1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

- ◆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시 지역 소재 협력업자의 참여 실적만 반영
- ◆ 협력업자 참여율 만점 기준을 자사실적 대비 30%→40%로 상향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frac{\text{지역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text{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40%이상	5
	30%~40%미만	4
	20%~30%미만	3
	15%~20%미만	2

- ① 자사의 당년도 공동도급 기성액을 합산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평가받은 결과에 따름)
- ② 당년도 공동도급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을 합산

2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평가

- ◆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평가를 통합
- ◆ 100% 현금성 결제시에만 우수 현금성 결제비율로 인정하도록 인정기준을 강화
- ◆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만점 기준을 30%→60%, 50건→120건으로 상향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frac{\text{②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text{① 신규 하도급건수}}$	60%이상	8
		40%~60%미만	6
		20%~40%미만	4
		10%~20%미만	3
		10%미만	0
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합계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합산	120건이상	8
		100건~120건미만	6
		80건~100건미만	4
		60건~80건미만	3
		6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 ①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이 있는 건수
- ②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으로서 법정기일 도래 전에 협력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계약 건수 합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로 인정

3 전자하도급계약 평가

❖ 전자하도급계약 비율 만점 기준을 50%→80%로 상향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frac{\text{② 전자하도급계약 건수}}{\text{① 신규 하도급건수}}$	80%이상	4
	60%이상~80%미만	3
	40%이상~60%미만	2
	20%이상~40%미만	1
	20%미만	0

- ①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
- ②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수

4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frac{\text{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수}}{\text{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80%이상	5
	65%이상~80%미만	4
	50%이상~65%미만	3
	35%이상~50%미만	2
	20%이상~35%미만	1
	20%미만	0

- ①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민간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②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시공과정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현장수를 합산
 - 당년도 계약 후 차년도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사용된 경우에도 평가시까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현장으로 인정



붙임

2021년 상호협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5점)		평가기준 변경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육성	57점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37점	평가기준 강화 평가기준 강화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27점	27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5점)	(5점)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8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4점)	(4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5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5점	
라.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5점	5점	가점 → 배점
4. 신인도	13점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3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감점, 없으면 기본점수)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10점)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10점)	
5. 가점	+6점	+6점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3점)	(+3점)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총 계	100점	100점	

※ 추후 관련 고시 개정 등에 따라 실제 평가항목 및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